

營漁組合法人の 發展方向 研究

崔聖愛 · 金成貴 · 馬文植

머리말

최근 국제적으로는 수산물시장의 개방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등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침체되고 있는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정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소득의 증대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담당할 소규모 영세어가의 조직화에 의한 소규모 정예 어업생산단체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생산단체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처음 시도되는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그 성패가 앞으로 수산업 발전 및 수산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발족 후 1997년 1월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현재 175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이 그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 협업적 경영이 가능하고 새로운 생산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나타나는 경영부실화, 설립과열현상 및 농협과의 갈등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없으나 영어조합법인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영어조합법인이 어업의 협업화·법인화를 통한 경영상의 유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책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초기단계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실태파악 및 분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적절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등 영어조합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건전한 법인경영체로 발

전시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자구노력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협조해 주신 해양수산부 지도육성과 관계관, 지방자치단체 담당관 및 영어조합법인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앞으로 연구자 및 영어조합법인 관계자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또한 정책 담당자에게는 수산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洪 承 湧

〈ABSTRACT〉

A Study on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he Fishery Partnership Corporation

In Korea, the current production system of the fishing industry is dominated by a limited number of capitalistic fishers and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small and poor fishing households. However, in the future, it would be impossible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ies and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fishing communities,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ishing industry.

‘Fishery Partnership Corporation(in Korean, *Younger Johap Beobin*, was newl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current production system of Korean fisheries. That is, the Fishery Partnership Corporation was introduced to organize the weak and small fishery workers of individual household, and establish a more competitive fishing company and thereby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revitalize the fishing communities.

Main purposes and functions of the Fishery Partnership Corporation are listed as follow :

- first, improve fishing productivity by enlarging the fishers’ management scale and conglomeration of manpower in the individual fishery household,
- second, improve fishery income by maximizing producers’ profit through cooperative management, and establishing a legal entity which emphasize managerial efficiency in the fishing industry,
- third, restrain from outflow of fishing manpower,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fishing communities and enable the responsible and proper fisherman to use the fishing ground more efficiently(it is possible, when the fisherman acquires the licensed fishing right and thereby the licensee and the beneficiary of the right become the same person).

〈초 록〉

영어조합법인의 발전방향 연구

현재의 소규모 영세어가 및 일부 자본가에 의한 생산체제는 급변하는 수산업의 내외정세에 대처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침체되어 가는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개별 영세 소규모 어가의 조직화에 의한 새로운 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현재의 생산체제를 보완하는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어조합법인제도는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 및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소규모 개별어가의 결합에 의한 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어업의 경영적 측면을 증시킨 협업적 경영방식 및 법인화로 이윤추구를 통한 어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면허어업권의 취득은 면허주체와 이용자가 동일하고 또한 책임감을 가진 적합한 어업인에 의한 효율적인 어장이용을 유도하여 어촌의 어업인력 유출을 막고 어촌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第 1 章 序 論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부적으로는 수산업 전면개방 및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등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별 영세소규모 어가를 조직화하여 소규모정예 어업생산단체를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영어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판매·수출 등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다. 그 방법은 협업화와 법인화에 의해 조직된 어업경영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2억원(지방비포함)이 지원되었다.

영어조합법인은 지역어업단체인 어촌계 및 수협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여 생겨난 생산단체로 어촌계와 수협의 틈새를 공략하는 사업운영을 함으로써 어촌계보다는 적극적인 이윤추구에 의한 어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단체인 영어조합법인은 기존의 생산체제를 변화시키고, 양식어업권의 취득은 현존의 어장이용을 보다 합리적인 이용으로 유도하여 수산업의 구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1월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현재 175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설립된지 겨우 2년째로 조합법인의 명의로 사업실시 경력은 1년 미만이 대부분으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운영의 부실화 및 설립 과열 등의 문제는 아

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초기단계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실태파악 및 분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적절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처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체이고 또한 정책사업의 수혜자로서 경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법인경영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처음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영어조합법인제도는 그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명칭조차도 매우 생소하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범위는 현 단계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 사례조사를 통한 경영현황에 대한 파악으로 한정하였다.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로 선행연구가 없어 참고 문헌 및 기초자료의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영농조합법인 관련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관련 연구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개관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

였으며, 제 4 장에서는 사례조사를 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어촌계 및 수협 조직 등 지역어업단체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제 6 장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발전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 정책과제, 자구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 결론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제 막 태동단계로 기초자료축적의 미비 및 선행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본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내용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서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결과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며 영어조합법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第 2 章 영어조합법인의 概觀

1. 도입 배경

정부는 수산업 전면 개방 및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등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별 영세소규모 어가를 조직화하여 소규모 정예 어업생산단체를 시급히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요인외에 수산업 내부요인에 의한 또 다른 시각에서 어가의 조직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어업생산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어장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책입안자에 의해 제기되어 '영어조합법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어촌계의 어장이용의 배타성은 어촌계원외의 어업인의 어장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특히 의욕을 가진 외부인 또는 젊은 어업인의 어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 어장을 개방¹⁾하는 것이 젊은 어업후계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령화되어 가는 어촌사회의 인구연령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어업의 생산효율성과 어촌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장이용제도의 개선이라는 인식 및 목적하에서 제도적으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고 함)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법('95. 12. 30) 및 동시행령('96. 12. 31)을 개정하고 시행규칙('97. 7. 1)이 제정되었다. 이러

1) 외부인에게 어장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획기적인 것이므로 보류되고 점진적인 개혁으로서 어촌계원 또는 수협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어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영어조합법인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약 23개월 정도가 경과한 1998년 11월 말 현재 전국에 175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및 어촌의 활성화가 영어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육성의 근거가 마련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도입 동기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이제까지의 농정으로는 한계를 직감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과 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 목적은 농업의 만성적인 문제인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적정 경영체를 육성하는 농업의 구조 개혁에 있었다.²⁾

영어조합법인은 마찬가지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어가의 규모화에 의한 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어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어촌의 활성화라는 목적하에서 도입된 것이다.

2. 목적 및 사업

수산업법 제9조 2에서 8개항에 걸쳐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제1항). 이 목적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수산업에 있어서 자금조달, 유통, 생산의 면에서 영세한 개인의 결합에 의한 적정 규모의 어업 경영체 육성을 통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어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개별농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업경영체로서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출현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는 생산형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유통관련 영농조합법인이 많았으며, 농업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을 개별농가를 보완하는 경영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고(제2항), 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제3항), 어업인이 아닌자도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제4항).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제5항), 그 설립은 5인 이상의 어업인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제6 및 7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 7)을 보면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생산·가공·판매·수출 등 사업경영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어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자본 등의 유입을 통한 어가의 자본영세성을 극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양식어업권의 취득³⁾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협업적 어업경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양식어업취득권과 관련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 우선순위가 어촌계 다음으로 되어 있어 면허취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장 면허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조합관리 면허(어업권)어장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개정(1962년)을 통해 조합원 중 특정인으로 하여금 어장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권 어장의 충유성격을 약화시키면서 전업 어업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특정인이란 조합원중에서 개인이 아닌 생산자그룹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공동출자인 합자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그룹에 의한 어장관

3) 이미 어장이용의 포화로 더 이상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어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일부에서는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음. 또한 면허취득시 어촌계와 결합하게 되므로 좁은 어촌 지역내에서 갈등 및 반목을 조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유어장이 없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과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차단하는 것과는 관점이 다름. 그리고 어촌계가 취득한 면허어장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어촌계원이면 자동적으로 어촌계 취득의 면허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촌계원중에서 어업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소수에 의한 어장이용을 허용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권 취득은 앞으로 현행의 어장면허제도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수산업법개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

리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들 생산자그룹은 법인인 어업생산조합을 조직하여 판매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업협동조합내 임의 조직으로 일본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⁴⁾

이와 같이 일본은 어협조합원중 특정인들에 의한 어장이용의 허용, 어업협동조합내 임의 조직으로서의 어업생산조합 등 우리의 영어조합법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조합법인을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경영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과연 경험이 없는 협업적 어업경영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⁵⁾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개별경영의 성격이 강한 가공 및 유통에 주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의 출현으로 다른 시각에서의 농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도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경영체 육성을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별어가의 어업경영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다양화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조합법인의 특징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축협, 수협과 같은 조합법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법인은 조합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결합체로서의 조직특성을 살리면서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단체이다.

조합의 측면에서 어업경영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를 통한 유리함과 법인의 측면에서 경영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유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법인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 II-1>이다.

-
- 4) 어업생산조합은 약 680개 정도가 조직되어 있으며 법인조직이 개인보다는 세제혜택상 유리하며 용자받기 쉬운 장점이 있음.
 - 5) 1996년 말 현재 약 4,900여 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의 실태를 보면 당초의 취지인 협업적 농업경영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협업경영 방식은 정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표 II-1〉

조합법인의 특징

구 분	조 합	법 인
특 징 및 장 점	○ 인격적인 결합조직(1인1표의 합의도출에 의한 의사결정) ○ 규모의 경제성(개별어가의 소규모 생산통합) ○ 출자에 의한 자본·기술집약적인 어업경영 가능 ○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 ○ 협업경영으로 사업능력을 보완 ○ 판매이익의 향유	○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 ○ 사회적 활동과 업무상의 이점을 추구 ○ 제도상의 유리함(지원, 세제상의 혜택, 개인보다 유리한 용자조건 등) ○ 자본조달능력 증대 ○ 대외적 신용력 제고 ○ 금융 및 시장교섭면에서 우위 확보 가능

협업화를 통하여 어업경영의 전문화 혹은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어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하고, 소규모 어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 집약적인 어업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협업경영은 개별어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어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등을 연계한 수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업적 경영체가 장차 수산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어가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어업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몇몇 영어조합법인은 수산기업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화는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법인격의 획득에 따른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업무상의 이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 세제상의 혜택, 개인보다 유리한 용자조건 등 제도상의 유리함이 주어진다.

그리고 법인화를 통하여 자본이 결합되어 자본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개별어가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력이 제고되어 금융면에서나 시장 교섭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업화 및 법인화가 초래하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설립후 8년째를 맞는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경영의 부실화, 법인설립의 과열현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육성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이제 막 태동단계로 설립과열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정책적 지원

영어조합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영어조합법인 규칙이 제정되어 조합법인의 사업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보장하였다. 직접지원으로서는 조합법인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보조 및 저리융자), 수산업법상의 면허취득 우선순위 부여이며, 간접지원으로서 세제상의 지원 등이 있다.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영어조합법인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영어조합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원은 수산사업집행지침에 따르고 있다.

1) 조합법인의 사업 지원상의 우선순위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지원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97. 9. 1 공포·시행)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동 규칙 제3조(보조금교부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및 영 제 67조(보조대상사업)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해면양식어업,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내수면 어업개발시설 등 5개 수산사업이다. 지원대상사업별로 우선순위, 지원조건, 자격요건 등의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I-2>이다.

〈표 II-2〉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지원 내역

지원대상 사업	우 선 순 위	지원 규모(백만원)	자 격 요 건
수 산 물 산 지 가 공 시 설	① 산지조합 ② 어촌계 ③ 어업인후계자(법인) ④ 영어조합법인	- 지원기준 : 보조 385 용자 231, 자담 154 - 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0년 (3년거치 7년상환)	- 가공공장 시설부 지 확보 - 사업 신청일 현 재 법인등록 후 운영 기간 1년 이상의 법인
수산물 유통시설	① 산지조합 ② 어촌계 ③ 수협중앙회 ④ 영어조합법인	- 지원기준 : 보조 80 용자 160, 자담 160 - 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부지확보증서 또 는 사용허가서
해면양식어업 - 양식어장개발 - 양식기반시설 - 공동양식어장 개발	① 수협 또는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3인 이상 어 업인 협의체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상이함 - 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부지확보증서 또 는 사용허가서 - 자기자금 예치증 명서
내 수 면 어 업	- 새마을양식계, 영농어법인, 내수면양식생 산조합(협회) 등 단체와 3인 이상 협업체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상이함 - 금리 : 연 5%, 3% - 용자기간 : 15년 (5년 거치 10년 상황)	- 부지확보증서 또 는 사용허가서 - 용자조건 및 자담 능력이 있는 자
어촌관광휴양 단 지 조 성	① 지방자치단체 (시·군) ② 수협 또는 어촌계 ③ 영어조합법인	- 지원기준 : 국고용자 1,500, 지방비 900, 자담 600 - 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보조 가능 - 15,000㎡ 이상의 부지 확보 또는 확보가능한 경우
선 정 절 차	○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 각 시·도(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공개 심의·선정		
기 타 용 자 및 우 선 지 원	○ 영어자금용자 한도 확대(영어자금 운영 요령) ○ 유통참여 영어조합법인 우대(농안기금 사업시행 지침)		

자료 :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서 작성.

주 : 금리 5%는 IMF이후 영어자금 금리와 동일하게 6.5%로 상향조정.

사업지원은 주로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어촌계와 수협보다는 대체로 후 순위이나 해면양식어업중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어조합법인이 최우선 순위인 경우도 있다. 지원규모를 보면 사업별로 지원금액, 보조·융자·자담의 지원율이 상이한데 생산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 지원율이 높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 및 자담비율이 높다. 지원조건을 보면 연 금리는 영어자금의 금리와 동일하고, 융자기간은 대체로 10년(3년 거치 7년 상환)이나 내수면어업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15년으로 길다.

자격요건은 시설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경우는 법인 등록 후 1년간의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지원 신청을 위해 1년간의 운영실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는 법인이 많다고 한다.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은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각 시·도(시·군)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공개로 심의하여 선정한다.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하지 않는 기타 융자 및 지원을 보면 영어조합법인이 생산분야 사업 경영시는 100% 융자 가능하도록 영어자금융자 한도의 확대, 그리고 유통참여 영어조합법인 우대지원으로 규격 출하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자 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규격 출하시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협에서 0.5%의 취급 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어업면허 취득상의 우선 순위

영어조합법인의 명의로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어장이용을 통한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협동양식어업⁶⁾에 대한 면허취득의 우선순위는 어촌계 다음의 제2순위이고, 조합법인이 마을어업의 어장내에서도 어업면허를 취득(제9조 3항)할 수 있으며,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에 대하여도 면허(제9조 5항)를 취득할 수 있다.

6)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m 초과 10m 이내, 단, 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7m 초과 15m 이내)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수심 15m 이내의 수면에 대하여는 어촌계와 수협에게만 어업면허를 부여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류양식 및 정치망어업과 같이 비교적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개인도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동일어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어촌계원 또는 수협조합원에 의해 조직된 영어조합법인도 동일 수면에서 어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어장이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동일어장의 이용상황은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으나 여유 어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어장이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만약 수산업법이 개정된다면 면허기간이 완료되어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면허기간을 연장하던 것을 면허어장에 대한 적절한 어장관리를 실시했는가 하는 등의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자에게 면허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촌계 또는 수협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해 왔던 어장에 대하여 영어조합법인도 어장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어장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어촌계의 어장이용 및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적격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새로운 어업권제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아무튼 영어조합법인은 개인보다는 어업권취득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과 앞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면 어장이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대가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영어조합법인이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해면이용 공간이 동일한 어촌계와 조합법인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어촌계원이면 자동적으로 어장이용권이 부여되는 것보다는 의욕과 책임감을 가진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생산자그룹에게 어장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장이용의 공평성 및 생산성 향상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7) 이 부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어업권 향유주체가 어업협동조합이지만 조합원중 특정 그룹 즉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어장을 이용하게 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영세화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어장이용제도를 바꾸었음.

3) 각종 세제상의 지원

영어조합법인은 지방세('97. 8. 30 지방세법 개정) 및 국세('97. 12. 13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감면 혜택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I-3>이다.

실질적으로 수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영어조합법인의 경우는 지구별 조합 또는 어촌계보다는 세제상의 감면 혜택이 다양하고 그 비율도 높아 면제가 많다.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외에 어업용 기자재의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사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표 II-3>

세제상의 지원 내용

구 분		영어 조합 법인	지 구 별 수 협	어 촌 계
세 제 지 원	국 세	○ 법인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공과금 면제 (수협법 제9조) - 세금과 부과금 면제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 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부과 3년 유예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사업소세 50% 경감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 사업소세의 50% 경감

第 3 章 영어조합법인의 現況 및 問題點

1. 영어조합법인 설립현황

1) 지역별 영어조합법인 분포현황

1997년 12월 31일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전국에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 현재 영어조합법인은 175개소 설립되어 있으며 1년 사이에 두 배나 설립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경기, 전북,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다. 현재도 영어조합법인이 신설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5개소 영어조합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북, 제주, 경남이 10% 내외의 분포를 보여 전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전남과 경남인데 전남에 비하여 경남의 영어조합법인 설립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지역별 조합법인의 설립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부 산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1997. 9	1	-	-	3	6	10	47	1	6	11	85
1998. 3	1	-	7	3	12	13	65	1	10	18	130
1998.11	1 (0.6)	1 (0.5)	10 (5.7)	5 (2.9)	13 (7.4)	23 (13.1)	85 (48.6)	1 (0.6)	14 (8.0)	22 (12.6)	175 (100%)

자료 :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 개요」, 1997. 12 및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제작성.

이러한 현상은 지역수산업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경남의 경우 대표적인 양식어업인 굴, 우렁챙이, 해수어류, 피조개 양식어업의 생산자는 업종별 조합을 조직하여 생산자 단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영어조합법인을 중복으로 조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 설립되어 있는 영어조합법인은 이들 업종별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어선 어업자 등이 양식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도 있다.

전남의 경우는 해조류 특히 해태 양식업이 발달해 있으나 해조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해수어류양식조합만 설립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업종별 조합의 미설립이라는 요인, 수산업의 선진지역 및 다수의 어업인 그리고 이들 어업인의 진취적인 어업생산 활동 등이 반영되어 영어조합법인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수산업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현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사업형태별 영어조합법인 설립현황

영어조합법인이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형태별 법인수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 <표 Ⅲ-2>인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30개소와 175개소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Ⅲ-2>

사업형태별 조합법인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양 식	가 공	유 통	어 선	복 합					기 타
					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130	65	16	2	3	42	24	3	2	13	2
175 (100%)	93 (53.1)	23 (13.1)	6 (3.4)	6 (3.4)	42 (24.0)	30	8	2	2	7 (4.0)

자료 : 1) 해양수산부.

2) 175개소의 자료는 필자가 분류하였음.

3) 내수면 양식 및 내수면 어로, 관광은 기타에 포함.

영어조합법인이 희망하는 사업형태는 생산과 관련된 양식어업이 가장 많아 전체의 53%의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복합형태가 2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보면 직접 생산활동과 관련된 사업 형태는 양식, 어선, 양식·가공, 양식·유통, 양식·가공·유통, 내수면 양식 및 어로로 관련 영어조합법인은 141개소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여 생산과 관련된 조합법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공도 생산활동으로 간주한다면 생산과 관련된 법인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중간육성, 종묘배양 등을 포함한 양식어업을 사업으로 선택한 영어조합법인이 53%를 차지하여 생산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어업 집중현상은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어가를 하락시키고, 사례조사에 의하면 판로 기술이 부족한 어업인들에게 양식생산물의 처리 및 유통 문제를 야기시켜 영어조합법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영어조합방법의 형태는 생산-가공-유통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며 가능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사업을 영어조합법인이 담당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조합원 규모별 영어조합법인 설립 현황

영어조합법인이 130개소 설립되어 있을 때는 총 조합원수가 883명, 평균 조합원수는 6.8명이었으나 175개소로 증가하였을 때 총 조합원수는 1,455명, 평균 조합원수는 8.3명으로 증가하였다. 조합원수는 증대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10명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대부분으로 조합원 규모별 영어조합법인 설립 현황을 나타낸 <표 III-3>에서 알 수 있듯이 5~10명 규모의 법인이 전체의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5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화성군의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법인이고, 구성요건의 충족 인원인 5명이 최소규모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

조합원 규모별 조합법인 설립현황

단위 : 개소, 명

법인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총조합원 수	평균조합원 수
130	109	14	6	1	-		883	6.8
175 (100%)	147 (84)	15 (8.6)	6 (3.4)	1 (0.6)	-	6 (3.4)	1,455	8.3

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수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냐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업의 경우 어촌계, 법인어촌계, 업종별 조합 등 생산자 조직의 경험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구성원수는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는 총족 인원 10명 이하로 하고 경비절약을 위하여 상근 직원은 고용하지 않고 소수 정예로 각 구성원의 업무 분담하에서 사업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⁸⁾

4) 출자규모별 영어조합법인 설립현황

130개소 영어조합법인의 총출자금액은 99억 6,800만원으로 조합법인당 평균 출자액은 약 7,700만원이며, 총 조합원수 883명을 고려해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액은 약 1,1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의 그것과 비슷하다.

〈표 III-4〉

출자규모별 조합법인 설립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50 미만	50~100 미 만	100~200 미 만	200~500 미 만	500~1,000 미 만	총 출자액	법 인 당 평균출자액
130 (100%)	39 (30)	33 (25.4)	40 (30.8)	16 (12.3)	2 (1.5)	9,968	76.7

자료 : 해양수산부.

8) 영농조합법인은 조합법인당 평균 17명(1996년 말 현재)임.

출자규모별 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1억~2억원 사이가 40개소와 5천만원 미만이 39개소로 비교적 많으며 전체적으로 1억원 미만이 약 55.4%, 1억원 이상이 약 4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5) 어업면허권 취득의 영어조합법인 현황

정확한 통계수치는 알 수 없으나 23개 시군의 영어조합법인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어업면허권을 취득한 법인은 강원도 삼척시 1개소, 북제주군 1개소, 경기도 화성군 5개소 등 총 7개소로 나타났다. 삼척시 및 북제주군의 경우는 협동양식어장 바깥쪽 즉 수심 15m보다 깊은 어장에서의 양식어업 면허를 법인명의로 그리고 공동생산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과연 공동생산에 의한 협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화성군의 경우 총 8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총 176명으로 1법인당 22명의 조합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8개소의 조합법인 중 5개소의 조합법인이 협동양식어업으로 한정어업면허권⁹⁾을 1998년 7월에 취득하였다. 한정어업면허제도는 수산업법 제 14조 2(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 등이 정해진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해면에 대하여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시적 한정어업면허제도는 공공사업의 착수지연에 따른 유휴상태의 해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산업법에서 이를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 등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면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화성군은 '화옹지구 간척사업지역'으로 어업피해보상은 마무리되었으며 관련기관인 농림부와 협의하여 한정어업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에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화성군에 조직되어 있

9) 5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총 8건, 105ha 면적의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양식면허건 수 및 종류는 김 2건(30ha), 굴 3건(29ha), 개량조개 3건(46ha)임.

는 법인은 한정어업 면허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어업인은 득량만 어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득량만 내 약 500ha 정도의 여유 어장이 있어 이 어장에 대한 신규 면허를 목적으로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보성군에서는 신규 면허를 억제하고 있으며 어장재배치계획에 따라 득량만내 어장을 재배치하면 여유어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보다는 법인형태가 어업권 취득이 유리하므로 어업권 취득 목적이 법인 설립의 동기인 경우가 많다.

2. 영어조합법인의 사업현황

영어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즉 조합법인의 설립동기가 사업의 협업경영 및 법인화를 통하여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각종 정책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군의 영어조합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실시여부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11월말에 실시하였다.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37시군 중에서 165개소¹⁰⁾의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23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사업실시 여부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Ⅲ-5>이다.

<표 Ⅲ-5>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실시 현황(1998. 11)

법 인 수	사 업 실 시			사 업 미 실 시	조합법인 설립시군	설 문 대상시군
	소 계	지 원	미 지원			
165개소 (100%)	66 (40)	36 (21.8)	30 (18.2)	99 (60)	37개소 (100%)	23개소 (62.2%)

165개소의 영어조합법인중에서 국고 및 지방비지원에 의한 사업실시 법인수가 36개소이고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수

10) 1998년 11월 현재 시군별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은 증가하고 있음.

가 30개소로 총 66개소(40%)의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¹⁾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은 설립되어 있으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조합법인수가 99개소로 전체의 60%로 사업실시 조합법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사업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조합법인도 있으므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원에 의한 사업실시만을 바라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절반이상의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 조합법인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영어조합법인이란 의욕을 가진 소수 어업인으로 조직되어 사업의 협동경영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자구 노력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 외부의 지원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 지원사업을 바라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아 조합법인의 난립이 우려된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¹²⁾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산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가능하므로 법인설립이 곧 지원 대상자격 부여는 아니다. 그러나 수산사업집행지침의 요건만으로는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선정은 신중해야 하므로 사업자 대상자격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³⁾

11) 영농조합법인은 전체의 52%가 사업실시에 의한 운영중에 있음.

1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996년 말까지는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으나 1997년 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시책을 수정하였음. 그 기준은 i) 출자규모 1억원이상인 법인, ii)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 iii)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iv)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v) 법인설립후 1~3년간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vi)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분야의 영농경력 3년 이상인 법인, vii)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viii)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 및 성공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것 등임.

1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영어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할 총출자액·사업능력·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1991년부터 설립·운영(대폭적인 정부지원은 1994년부터 실시됨)된지 6년이 지난 1997년부터 기준을 적용하기에 이르렀음. 이제 막 태동단계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을 운영경험이 앞선 영농조합법인과

3. 영어조합법인 사업의 시설지원 현황

1) 사업의 시설지원 현황

1998년 6월말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받은 영어조합법인은 총 33개소, 사업의 시설지원 금액은 총 102억 7천만원¹⁴⁾이다. 총 지원 금액 중 보조 및 융자를 포함한 국고지원이 총 80억 6,600만원(78.5%)이며, 지방비 지원이 총 22억 400만원(21.5%)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국고지원은 보조와 융자부문에 나뉘어 지원되는데 현재 보조지원은 36억 5천만원(45.3%), 융자지원은 44억 1,600만원(54.7%)이며 지원은 시설건설에 대한 보조이며 융자이다. 융자조건은 해양수산업 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수협을 통하여 융자를 받는다. 융자조건은 사업별로 상이하나 연 평균금리는 5.0~6.5% 사이이다.

지방비는 전남과 경남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는 도비와 군비에 의한 전액 보조지원이다. 반면 경남의 경우는 경남과 경남도지회농협이 자금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조성한 '경남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을 통하여 융자 혜택을 받고 있다. 융자조건은 사업에 따라 상이하나 시중 은행 금리에서 5%를 경남도가 보조하고 있어 까다로운 국고지원보다는 융자가 용이하여 어업인에게 선호되고 있다.

시·도별 지원을 보면 전남이 14개소로 그리고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가장 많으나, 국고지원은 제주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2~3년간 경영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14)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996년말 현재 전국 총 4,906개소(농업회사법인 포함) 중 총 3,653개소(74.5%)가 정부정책 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총 지원금액은 9,426억원이며 이 중 무상의 보조금이 5,090억원(54%)을 차지함.

〈표 III-6〉

영어조합법인 사업의 시설지원 현황(1998년 6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시·군별		국 비			지방비	사업의 종류
			계	보 조	용 자		
계	33개소		8,066	3,650	4,416	2,204	
강 원	소계	2	472	236	236	-	중간종묘배양장시설
	삼척시(2)		472	236	236	-	살포식가리비양식
전 남	소계	14	2,834	649	2,185	1,180	굴채묘시설
	고흥군(1)		-	-	-	50	해조류(파래)가공수출
	장흥군(3)		128	64	64	240	패류양식(피조개종패살포)
	강진군(1)		160	80	80	-	육상어류양식(넙치)
	해남군(1)		160	80	80	50	육상전복양식
	영암군(1)		1,200	-	1,200	-	내수면양식(메기)
	함평군(2)		140	-	140	40	육상어류양식(가물치)
	구례군(1)		350	-	350	-	철갑상어시험양식
	영광군(1)		696	425	271	800	굴비전시관
							수산물산지가공(굴비)
경 남	소계	8	1,792	1,050	742	1,024	패류양식(살포식)
							수산물 가공
	진해시(2)		-	-	-	200	수산물생산 및 판매
	거제시(2)		-	-	-	824	중간종묘배양장
	남해군(2)		1,176	665	511	-	전복육상양식
	하동군(1)		616	385	231	-	수산물산지가공 (냉동처리)
제 주	소계	9	2,968	1,715	1,253	-	수산물산지가공(옥돔, 기타수
	북제주군(6)		2,328	1,395	933	-	산물냉동·냉장)
	남제주군(3)		640	320	320	-	전복육상양식 육상어류양식(넙치)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작성.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도별 특징

33개소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 및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Ⅲ-7>이다.

<표 Ⅲ-7> 지원시설 및 사업내용 현황

지원시설 종류	내 용(개소)	총 개 소	도 별 (개소)
양 식 시 설	○ 중간종묘배양(3) ○ 굴채묘시설(1) ○ 내수면양식(2) ○ 육상전복양식(8) ○ 육상넙치양식(3) ○ 철갑상어시험양식(1)	18(54.5)	강원(1), 전남(9) 경남(2), 제주(6)
자 원 조 성 (종 패 구 입)	○ 가리비종패(1) ○ 피조개종패(3)	4(12.2)	강원(1) 전남(1) 경남(2)
산 지 가 공 시 설	○ 산지가공(9)	9(27.3)	전남(3), 경남(3) 제주(3)
산 지 유통 시 설	○ 직판(2)	2(6.0)	전남(1), 경남(1)
합 계		33(100%)	

지원시설을 보면 양식시설, 자원조성(종패구입), 산지가공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다. 이 중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은 영어조합법인은 18개소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지가공시설이 9개소로 약 27%를 점하고 있다.

시설지원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양식시설은 양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육상전복양식, 중간종묘배양, 육상넙치양식, 굴채묘, 내수면양식업, 철갑상어시험양식 등이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수요 및 판로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육상전복양식이 가장 많다. 현재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럭의 해상가두리양식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은 양식의 수급현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고부가

가치의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자원조성에 대한 지원은 생산형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지원으로 특히 강원도의 H영어조합법인은 법인명의로 양식어장을 면허받아 가리비양식사업을 영위하고자 가리비종패구입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경남의 자원조성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방비로만 지원하고 있다.

산지가공시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양과 특징 및 유통 등의 특색을 고려하여 굴비, 굴, 피조개, 새조개, 옥돔 등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거나 1차 가공하여 완제품회사에 납품하는 형태의 산지가공사업이다. 그리고 산지유통시설은 수산물의 직판 또는 판매사업으로 2개소 있다.

지역적 특징을 보면 업종별 조합이 발달해 있는 경남의 경우는 양식사업보다는 산지가공사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지 않은 전남과 제주도는 양식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영어조합법인의 문제점

시·군의 영어조합법인 담당자 23명에게 현재 영어조합법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육성에 대한 견해를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선 담당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설립요건, 지원 및 관리,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아울러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였다.¹⁵⁾

1) 문제점

(1) 설립요건의 문제점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개인중심의 설립 및 운영,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한 법인설립, 지원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설립, 적정한 출자 및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조합법인 출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들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문제점 및 견해파악이므로 가능한 가감없이 수 용하고자 하였음.

① 개인중심의 설립 및 운영

- 구성원 5인 이상이라는 설립요건만 갖춘 서류상의 영어조합법인으로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여 협업 경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남.
- 구성원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제, 사촌, 부자, 부부 등 친인척이 출자하여 운영(가족경영)

②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한 법인설립

- 내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형식적인 조합법인의 설립절차)
- 의욕, 책임감,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됨(출자자들의 문제점)
- 설립절차가 다른 법인에 비해 간단하여 조합법인의 난립 우려

③ 정부지원의 수혜를 목적으로 설립

- 정부지원의 수혜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합법인은 부실운영될 우려가 큼.
- 조합법인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지원자격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림(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1년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함).
- 개인보다는 어장면허취득이 우선하므로 면허취득을 목적으로 설립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조합법인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음.

④ 적정한 출자 및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법인 출현

- 등기부 등본상 출자금과 출자계좌 확인이 안됨(특히 현물출자).
- 활어유통업자 등 다른 목적(주로 세제혜택)의 조합법인 설립신청이 많음.
- 조합법인을 설립하고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 등기소에서 등기만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담당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음.

(2) 지원 및 관리 측면의 문제점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의 모호성, 사업신청 절차상의 문제점,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관리감독 기능의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이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및 범위의 모호성

- 사업별 지원가능한 시설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함.
- 사업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자연 및 혈연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경영분석을 통한 합리적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② 지원 사업신청 절차상의 문제점

- 경영능력이 없더라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사업지원이 가능함.
- 행정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할 수 없음.

③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사업자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자담부분을 충족시킬 수 없음).
-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 담당자가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미비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못함.
-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조치규정이 미비.
- 조합법인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외부 감사가 엄격하여 책임있는 해당 시군에서는 보조사업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행정에서 경영책임까지 관리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가 안됨.

④ 관리 감독기능의 부족

- 세무기관이 아닌 행정담당이 조합법인의 수입 및 경영관리를 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은 관리만 할 뿐 부실 조합법인에 대한 권고 또는 해산권한이 없어 철저한 관리가 안됨.
- 조합법인 설립은 등기후 30일내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 전에 행정기관이 지도할 수 없음.
- 사업실적이 없으면 해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음.

(3)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경영능력부족, 자본취약 및 협업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영능력문제

- 사업계획성, 추진력, 치밀성 및 책임의식이 부족하며 보조지원으로 망해도 큰 손실은 없다는 의식이 팽배
-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 및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경영 지식의 부족(조합법인의 직관사업은 장점도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역부족)
- 조합법인을 경영 관리할 리더의 부재

② 자본 및 금융문제

- 시설유치에 대한 지원이 있을 뿐 사업운영을 위한 자기자본취약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지원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경남)을 선호
- 양식면허가 없는 어선어업자들이 양식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함(양식업자는 업종별 조합에 가입)

- 수협으로부터 용자받기가 매우 까다로워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원사업규모가 개인사업규모보다 작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조합법인의 사업에 전념할 수 없어 타인의 눈치만 보고 적극적이지 못함.
- 대부분의 어업인은 보조 및 용자만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담의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소요됨.

③ 협업사업의 문제점

- 개인이 지원받아 사업을 하면 개선과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나 협업사업은 책임감이 없고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협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며 현재 지원은 법인사업으로 하기에는 지원규모가 적으므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올릴 수 있음.
- 설립당시는 서로 의견이 맞아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운영 및 사업의 논의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어려워 협업경영보다는 개인경영의 조합법인이 많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음.

④ 기타

- 영어조합법인이 부도나 파산시에는 법인대표의 사유재산까지 압류되는 등 무한책임을 지게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에 대한 견해

대체로 소수어업인들의 협업적 어업경영이라는 생소한 조합법인 운영방식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개인경영에 익숙해 있던 어업인이 합의도출에 의한 조합법인의 운영방식을 체득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의도한대로 협업적 어업경영을 이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조합법인의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일부 담당자는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자들은 어촌계는 인원이 너무 많아 협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어 사업실시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은 뜻을 같이하는 소수정예의 어업인들이 유연하고 기동성있게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조합법인 육성
- ii) 어업인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 iii) 해양산업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의한 육성
 - 새로운 품종개발 및 제품개발(육상종묘생산 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거제시의 경우 : 우렁쉥이 캔개발, 육상 굴채묘 등)
 - 지방자치 단체장이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
- iv) 선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시설, 운영, 수출자금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통한 육성
- v)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어민이 대부분이므로 의욕과 아이디어가 있는 조합법인에게는 보조 및 융자지원에 의한 육성이 필요함(행정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 vi)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재원조달 이 어려우면 융자사업으로 별도 지원
- vii) 국고보조보다는 융자지원과 자담에 의한 조합법인의 사업경영을 유도
- viii) 이제 시작단계로 영어조합법인이 정비도 안된 상황에서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통한 육성방법은 이득보다는 손실의 가능성이 많음.
- ix) 융자와 자담만으로 수산사업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수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수산업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힘들므로 보조지원이 필요함.
- x) 영어조합법인의 문제는 법인운영으로 경영교육이 필요함.
- xi) 장기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2~3년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第 4 章 영어조합법인의 事例分析

1. 영어조합법인의 사례분석 개요

실제로 출현한 조합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실시 중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66개소중 9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의 운영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설립되어 있는 제주도 3개소(안덕·북제주·제주시 어민후계자영어조합법인), 전남 2개소(영광굴비특품사업단·돌머리영어조합법인), 경남 4개소(해양·오성수산·남해전복·웅비영어조합법인)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선정은 사업지원을 받은 조합법인 또는 시군이 추천하는 조합법인으로 하였다.

현재는 조합법인의 태동시기로 사업준비단계인 경우가 많고 사업실시중에 있는 조합법인일지라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업운영 및 사업실적¹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대표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한 개괄적인 현황파악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사업실적이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간단한 경영자료를 함께 입수할 수 있었다.

사례를 정리하여 개요로 나타낸 것이 <표 IV-1>이다. 1998년 11월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안덕, 북제주, 돌머리, 해양영어조합법인의 4개소이며,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곳이 오성수산, 남해전복, 웅비영어조합법인의 3개소이다. 제주시 어민후계자 영어조합법인은 어민후계자의 명의로 직판장을 운영해오다가 1997년 7월에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하였다.

16) 매년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3월 10일까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3월말까지)하도록 되어 있어(영어조합법에 관한 규칙 제5조) 사례조사시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음.

〈표 IV-1〉

영어조합법인 사례의 개요

구 분	안 덕	북제주	제주시 어 민 후계자	영광굴 비특품 사업단	돌머리	해 양	오 성 수 산	남 해 전 북	웅 비	
설 립 일 시	'97. 1	'97. 5	'96. 8	'93. 8	'97. 9	'97. 8	'98. 4	'97. 1	'98. 2	
사 업 개 시 일	'98. 3	'98. 1	'96. 9	'95. 2	'98. 4	'98. 4	'99시작	'99시작	'99시작	
사 업 형 태	육 상 양 식 (전북)	산 지 가 공 (염 장 고등어, 갈 치 건 조)	산 지 가 공 및 직 판 사 업	산 지 가 공 및 보 관	내수면 양 식 (메기)	산 지 가 공 및 수 출 (피조개, 새조개)	산 지 가 공 (굴)	공동어장 채취 및 육상양식 (전북종 묘생산)	육 상 양 식 (전북)	
출 자 규 모 (좌)	2,000	5,000	40,900	26,500	20,000	6,000	5,000	5,000	4,000	
조 합 원 수 (명)	5	5	15	96	5	5	5	5	5	
시설 지원 (만원)	보조	8,000	38,500	61,300	100,000	-	38,500	38,500	20,000	8,000
	융자	8,000	23,100	39,100	-	14,000	23,100	23,100	20,000	8,000
	자담	4,000	35,400	69,700	22,000	20,000	35,400	26,400	10,000	4,000
사 업 실 적	없 음	없 음	24억원 ('97)	44,000만원 ('97)	없 음	45,000 달러 4,400만원	없 음	없 음	없 음	

그리고 영광굴비특품사업단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실시해오다가 1997년 1월에 영어조합법인으로 명칭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다른 영어조합법인보다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형태별로 보면 수산물산지가공 5사례(2사례는 직판사업을 겸함), 양식 4사례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주로 산지가공 및 양식에 집중되어 있다. 출자규모는 직판사업을 겸하고 있는 제주시어민후계자,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과 내수면양식을 운영하는 돌머리영어조합법인이 2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6개소는 1억원 미만이다.

조합원수는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시어민후계자 영어조합법인이 15명으로 그 다음이며 나머지 7개소는 조합법인의 설립 총족인원인 5명이다.

조합법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지원상황을 보면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지가공시설의 경우는 보조 및 융자지원이 총 6억 1,600만원이다. 양식의 경우는 총 지원금액은 상이하나 보조와 지원의 비율은 동일하다. 역시 직판사업을 영위하는 2개소의 제주시어민후계자 및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적을 보면 3개소의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는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1998년도 11월 현재까지 매출이 없거나 1999년부터 사업예정인 경우이다.

2. 영어조합법인 사례

1) 안덕 영어조합법인(남제주군)

영어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제주도내에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제주시 4개, 서귀포시 1개, 북제주군 10개, 남제주군 7개, 총 22개에 달하는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들 중에서 남제주군의 안덕영어조합법인(화순리 소재), 북제주군의 북제주 영어조합법인(두모리 소재), 제주시의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소재하고 있는 안덕영어조합법인은 1997년 1월 육상양식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2년동안 조합원은 5명으로 변화가 없으며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평조합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과거직업은 양식업, 어선어업, 나잠업 등으로서 화순리 일대에서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작업(시설투자, 노력봉사, 공동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출자는 1좌에 1만원으로 총 2천좌(2천만원)가 출자되었으며 현물도 일부

출자가 이루어졌다.

현재 안덕영어조합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양식수조시설 1,793㎡(약 5억 4천만원), 배수침전시설 108㎡, 부대시설 345㎡로 시가는 총 7억원(국고 보조 8천만원, 용자 8천만원 포함)에 상당한다. 이 외에도 개인소유의 대지 3,107㎡와 개발예정인 밭 11,599㎡가 현물출자될 예정이며 봉고차량 1대(570만원에 구입), 전복치폐 12만미(1억 2천만원에 구입), 어류 5천미(250만원에 구입), 채란·사육설비(7천만원에 구입)가 있다.

안덕영어조합법인은 2002년까지 연간매출액이 최소한 100억원에 이르는 중 소수산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시설 및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제주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수(평균수온 23℃ 이상)를 활용하여 고수온 해수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수산물양식의 부가가치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고급음식점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전복양식을 통해 양식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안덕영어조합법인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과 경영 노하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안덕영어조합법인은 현재 사료대, 인건비, 전기료, 금융비용 등 운전자금이 월평균 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수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매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경영 노하우의 부족도 예상된다.

현재 안덕영어조합법인은 설립된 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식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가공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 및 인력관리가 긴요한 실정이다.

2) 복제주 영어조합법인(복제주군)

복제주군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복제주 영어조합법인은 1997년 5월에 염장, 젓갈류 등 수산물의 산지가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시 조합원은 8명이었으나 출자능력이 부족한 3명은 탈퇴하고 현재는 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표이사 1명,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모두 임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업무는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와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사들과 감사의 직업이 모두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이기 때문이다.

출자는 1좌 1만원으로 각 조합원당 1천좌씩 총 5천좌(5천만원)가 출자되었으며 현물출자는 없었다.

현재 북제주 영어조합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부지 2,443㎡, 건평 669㎡의 복합건물이 있으며 건설자금으로 총 7억 7,400만원(국고보조 3억 8,500만원, 융자 2억 3,100만원 포함)이 소요되었다. 이 건물은 수산물 냉장·냉동을 위한 설비와 가공·숙성을 위한 설비 외에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건축공사는 1997년 10월에 착공되어 1998년에 완공되었다.

북제주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의 염장(고등어)과 건조(갈치)에 치중하고 젓갈류를 취급하는 계획은 판로가 마땅치 않아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원료 구입은 산지 어촌계, 한림수협 위판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직접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가공품은 수산물의 주소비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차량에 의해 수송되고 있으나 소요시간이 1시간이나 되어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다. 물류시설이 개선되고 취급상품이 다양해지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비효율적인 점이 지적되었다. 즉 창업과정에서 정부는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분담금'을 부과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였으며 금융상으로도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여 자금조달에도 애로가 많았다. 또한 어선어업을 주로 하는 조합원으로서 수산물의 가공분야에 대한 경영 노하우의 부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제주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향후 3년내에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어민후계자 영어조합법인(제주시)

제주시내 오라3동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은 1997년 7월에 수산물 산지가공과 직판을 통한 어민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설립시 조합원은 16명이었으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K조합원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을 탈퇴함으로써 현재는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표이사 1명, 이사 13명, 감사 1명으로 현재 모두 임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업무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집행하고 있다. 현재 이사들과 감사의 직업이 모두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다.

출자는 1좌 1만원으로 총 4만 900좌(4억 900만원)가 출자되었으며 현물출자는 없었다. 출자금 외 수협융자 8억원, 새마을금고 2억원의 외부차입이 이루어졌다.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은 전임 대표이사의 부도로 인한 채권변제를 위해 수협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이 수협에 의한 경매에 이르도록 경영이 악화된 이유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한계 및 IMF사태 이후 급격한 수요감퇴, K전임대표이사의 과도한 사업확장 등을 들고 있다.

우선 이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수산물직판장과 산지가 공공장사업은 그 취지에 비해 너무 열악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나타난 수산물직판장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설립배경 : WTO 출범에 따른 국내 수산물 유통경쟁력 제고
- 설립자금 : 정부의 보조와 융자, 어민후계자들의 출자금
- 유통체계 : 어민후계자(수산업)→산지공장(가공업)→직판장(판매업)
- 주요고객 : 관광객, 대도시 주민(서울)

그러나 이러한 수산물 유통구조는 다양한 품목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광어, 옥돔, 갈치 등의 대중어류 품목에 한정된 제주도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기 힘든 취약성을 갖고 있다.

또 제주시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은 전임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현재 수산물직판장이 위치한 제주시 오라 3동 부지는 1995년 7월 제주시 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추진한 수산물직판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영어조합

법인이 설립되기 2년전 매입된 곳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1991년 10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어민후계자협의회가 정부와 대기업의 후원에 의하여 전국규모로 추진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제주시 어민후계자 협의회장인 K전임대표이사도 제주시는 물론 서울시내에도 7개소의 직판장을 개설하고 회센터, 선어류매장, 건어물매장, 특산품매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민후계자의 수산물 직판사업은 IMF사태를 통해 수요가 급감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국내수산물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이 용자금액이 줄어들고 용자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제주시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도 심각한 적자경영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제주시 어민후계자 수산물직판장은 1998년 3월 새 대표이사로 바뀌었으나 1998년 12월로 예정된 경매가 완료되면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영어조합법인의 소유재산은 채권변제를 할 수 없는 수준이며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외부의 관리인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4)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은 영광굴비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화하여 도시민에게 공급하고자 설립되었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주)의 최초 자본금은 5,530만원(주식 1,106주)으로 사무실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33-2의 현위치에 두고 굴비의 저온저장과 가공처리, 특산품의 개발 및 보존, 육성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영광굴비전통을 계승하고 품질향상과 품질보증을 도모한다”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1995년 12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개편되었으며 주로 수산물의 가공·유통사업을 영위해 왔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의 주주는 정회원으로, 새로 들어온 영광굴비 보존회의 회원은 준회원으로 바뀌었으며 상인은 회원으로 남거나 탈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1997년 이후 수산업법에 영어조합법인 육성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명칭을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은 수협보다 농협을 통해 각종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특히 영광군 농협의 용자와 국고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어조합법인은 굴비를 비롯한 특산물 전시판매, 젓갈류 가공판매, 영광굴비 전시관 사업에 치중할 계획이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1992년 이후 연평균 6,400톤의 굴비를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도 늘어나 1997에는 4억 4천만원의 매출액과 1,200만원의 순이익(배당 5% 실시)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연간매출액이 3억원으로 감소되고 2천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9년에는 냉동창고보관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매출액 5억원, 순이익 1,500만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5) 돌머리 영어조합법인(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돌머리 영어조합법인은 내수면 양어장을 경영하는 영어조합법인이다.

돌머리 영어조합법인은 1997년 9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원 5명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전형적인 가족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이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출자현황을 정리한 것이다(〈표 IV-2〉 참조).

돌머리 영어조합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소유토지 약 7천평에 양어장과 사무실을 건축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는 수산물의 공동양식 및 출하, 시설의 공동이용, 어업대행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인이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은 국고보조와 수협용자를 포함한 자금조달상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이 법인에 대하여 해일피해자금 6,300만원과 시설자금 용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돌머리 영어조합법인은 현재 내수면 양식장(메기)을 운영하는 외에 해수양어장도 건축하고 있는데 양어장이 마을과 해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공급, 수원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자금의 적절한 조달과 운영을 위한 회계장부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IV-2〉

돌머리 영어조합법인 현황

구 분	직 업	나이(세)	출자금(만원)	직 책	비 고
A1	축산, 양식	43	6,000	대표이사	본인
A2	양 식	38	2,000	이 사	처
A3	양 식	28	4,500	이 사	사촌
A4	양 식	27	3,500	감 사	사촌의 처
B1	양 식	49	4,000	이 사	동업자
합 계			20,000		

주 : B1 조합원이 최근 사임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이 영입될 예정임.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머리 영어조합법인은 장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를 양식하여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 해양 영어조합법인(하동군)

해양영어조합법인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산물가공 유통사업을 위해 1997년 8월에 어업인 5명의 구성원으로 설립되었다.

조합원 5명은 대표이사 1명(사업계약체결, 판매 등의 총괄담당), 감사 1명(바다 현장담당), 총무 1명(공장 현장담당), 이사 2명(수송·운반 및 기계관리담당)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대표이사는 20년간 남해수협소속의 패류 중매인과 피조개 및 새조개의 패류가공사업(7년간)을 하였다. 그 외 조합원은 어선어업, 형망어업(피조개 채취선), 황토사업 등 어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 어장인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패류를 대상으로 조합법인을 조직하여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였다.

총 출자는 6천좌(현금 1천좌, 현물 5천좌) 6천만원이 출자되었으며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피조개 및 새조개 가공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시설지원을 받아 1998년 3월에 가공공장이 준공이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총 자금은 7억 7천만원(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총 소요된 경비는 9억 7천만원으로 2억원이 초과되었으며 자담분을 합치면 3억 5천만원을 조합에서 충당한 셈이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8년도는 준비단계로 그리고 특히 올해는 패류의 높은 폐사율로 패류의 생산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물량확보도 어려워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일본에 피조개를 수출하여 4만 5천달러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법인 자산은 대지 3천평, 120평의 가공공장 건물, 5톤 보냉트럭, 9인승 승합차, 24인승 버스 등이 있다.

해양영어조합법인은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피조개와 새조개를 활패 또는 냉장·냉동품으로 가공하여 유통 수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재료가 되는 피조개와 새조개를 강진만 생산기업인 또는 조합원의 어장에서 구매하여 탈각·내장제거·세척·소독·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한다. 피조개와 새조개는 아직 우리나라사람의 입맛에는 맞지 않고 가격 또한 고가로 국내판매는 어려운 형편이다. 산란기인 7, 8월의 비수기를 제외한 10개월간 공장가동이 가능하며 주로 인근의 여성인력(일당제) 30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 어촌주부의 부업으로 어가소득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업보다는 피조개와 새조개의 수출에 특화하여 수산물 수출로 하동에서 수출업체 일인자가 되는 것을 법인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부터 하동의 신기(하동군 노량리에서 전통적 방법으로 가공한 겨울 파래)를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약 4개월 동안 법인의 사업으로 가공하여 국내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피조개와 새조개는 소량 주문에 의한 국내 판로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 해양영어조합법인은 설립시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및 사업 실패했을 때를 고려하여 공동책임하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법인의 담보로 하고 있다. 전망은 밝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착수에서부터 실제 사업경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현재의 시설지원으로는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므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료구입 및 인건비 등 운전자금 조달의 곤란, 가공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작단계에서부

더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고 국고 지원의 경우는 변제 가능한 기본적인 재산 소유자로 한정해야 하고, 과거의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해양영어조합법인은 패류를 전문으로 취급해 왔고 사업경력이 있는 어업인들이 모여 조직하였으므로 원료구입에서부터 판매처 확보 등에 대한 노우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외부적 요인이 아닌 어업인의 경영 능력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7) 오성수산 영어조합법인(남해군 설천면)

오성수산영어조합법인은 남해군 설천면 문외리에 소재하고 개인 양식면허를 가지고 굴 양식어업에 종사해 온 지역내 어업인 5인이 '굴산지가공사업'을 공동경영하기 위해 1998년 4월에 조직되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산지에서 1차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굴통조림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이전보다 높은 어업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굴양식의 개인어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 구성원을 하나로 묶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수산물산지가공 공장의 시설지원(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총 공사비 7억 7천만원(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을 받아 부지 280평, 건평 150평(2층 건물) 규모의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및 보일러시설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직 건물 준공이 안된 상태이므로 본격적인 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굴패각을 탈각하는 일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요된 총 공사비는 8억 5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초과된 셈이다.

법인 구성원은 대표이사 1명과 이사 4명, 총출자 계좌는 5천계좌(현금 5천만원), 법인의 자산으로는 가공공장 부지 및 건물 외에 15인승 승합차 1대, 1톤 트럭 1대, 지게차 2대(장비)가 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며 시기적으로 굴 가공사업은 겨울철 4개월간 작업이 가능하며 굴 작업이 끝나면 바지락, 꼬막, 새조개의 1차 가공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굴의 가공은 탈각-세척-삶는 과정, 기타 패류의 가공은 탈각-세척 과정을 거쳐 통영에 있는 수출업체에 납품한다. 재료는 법인 구성원의 어장 및 설천면 인근 어업인으로부터 충당하고 생산 인력은 인근 어촌의 주부(일당제)를 고용(하루 60~70명 정도, 많을 때는 150명 정도)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어가 소득 증대 기여 등 지역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자금으로는 시설건립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준공검사가 끝나야 국고 보조 및 융자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또한 가공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어업인에게 전도금(3억원 정도)을 지불해야 하나 조합법인이 이러한 운영자금의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운영자금의 일부에 대한 정부 융자가 꼭 필요하며 금리 3% 이상은 법인경영에 부담이 되므로 장기저리융자를 희망하고 있다.

오성수산영어조합법인은 지역내 굴양식업이라는 동종업에 종사하는 개별 어업인이 산지에서 간단한 1차가공사업을 공동경영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법인 구성원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남해전복 영어조합법인(남해군 남면)

남해전복영어조합법인은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감사 1명, 기술이사 1명 총 5명의 구성원에 의해 1997년 1월에 설립되었다. 이들의 직업은 어촌계 공동어장 채취업(해녀 및 잠수기 사업이라고 지역에서는 함), 굴양식, 전복중간육성사업 등으로 어업 종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살려 우량종묘 생산 및 유통사업을 법인의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성원 5명은 총괄 및 자금담당, 공사담당, 회계담당, 감사담당, 기계담당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복중간종묘생산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 500평, 전평 300평의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 5억원(보조 2억, 융자

2억, 자담 1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초과 공사비에 대하여는 논의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 법인은 1997년 1월에 설립되어 협업 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어장 채취사업과 종묘생산사업을 실시하여 올 1998년도 사업실적 계획은 30억원이었으나 조금 미달되었다고 한다. 생산된 채취물은 수협위판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성계를 수출하였다. 법인의 채취사업은 연중 가능한 사업으로 주로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어촌계로부터 위탁받아 전복, 성계, 해삼, 멍게를 채취하여 어촌계와 분배한다.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해녀 14명과 잠수기업자 10명(잠수기 2척, 1척당 5명씩 작업) 총 24명 정도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복중간종묘생산'을 법인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앵강만내에 위치한 어촌계와 협업사업(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전복을 중간크기로 육성시켜 공동 어장내에 전복종패를 살포하여 동시에 어장을 관리(불법조업 단속)하여 전복성패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처음에는 치패를 구입하여 중간 크기로 육성시켜 살포할 계획이었으나 치패생산도 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어촌계가 종패를 살포하고 어장을 관리하면 위탁업자가 채취하는 빈매의 형태였으나 채취업자측에서는 우량종묘가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량종묘를 직접 생산살포하여 채취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판단하에서 종묘생산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은 시설이 완공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전망이 밝으나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해전복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 어장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촌계 공동어장을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어촌계 공동어장의 빈매와는 다른 형태로 채취업자가 자원조성 및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일선 어촌에서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점은 앞으로 어촌계 공동어장의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9) 웅비 영어조합법인(남해군 삼동면)

웅비영어조합법인은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4천만원의 현금출자와 대지 200평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전복육상양식업(1명) 및 어선어업(4명)에 종사하던 지역 어업인 5명을 구성원으로 1998년 2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대지 200평, 건평 200평에 총 공사비 2억원(국고보조 8천만원, 용자 8천만원, 자담 4천만원)의 전복육상양식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완성되었으나 아직 미비된 설비를 보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복육상양식업'을 법인의 협업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복의 모패를 전라도 노화도에서 구입하여 성패로 육성시켜 판매하는 사업이다. 성패육성까지 성장 단계별로 판매 가능한 시기는 1cm, 3~4cm, 성패의 3번으로 당시 가격을 고려하여 중간단계 또는 성패단계에서 출하한다. 자연산전복의 감소로 양식전복의 성패가격은 상승하여 수익성이 있고 전망도 밝으며 전복성패의 판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전복양식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연중 사업이 가능하고 평소에는 일손이 필요없으며 연중 1달간 정도 크기를 선별하는 작업에 5~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복 양식기술자를 상근직(1명)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연간 총 매출을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전복육상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잉여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구성원 5인이라는 요건은 법인 운영 및 사업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따라서 융통성있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업인 2인 이상의 구성요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특히 사업이 실패했을 때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갈등 등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개인 전복육상양식업을 경영하던 어업인이 정부의 사업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향이 강하고 타 4명의 조합원은 단지 구성원 5명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업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사업에서도 문제가 된 사업지원 수

해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부실 경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 사업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경영분석 사례연구

1)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나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회사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경영자의 일관성있는 방침이나 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경영전략을 상세하게 분석해보거나 재무, 인사, 조직, 마케팅 등 부문별 경영실적을 평가해 봄으로써 경영분석의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어조합법인은 대부분 설립된지 1년이 안되어 경영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가 회계장부도 유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행하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영분석은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i) 영어조합법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경영실적도 동일한 분야에서 같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영어조합법인의 경영실적으로 간주한다.
- ii) 경영실적은 재무분석에 중점을 두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실적 자료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부족한 자료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 iii) 향후의 경영계획 및 경영목표에 대한 분석도 되도록이면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경영분석을 행하려는 영어조합법인은 앞절에서 살펴본 9개 사례 중 실적자료가 입수된 법인을 지역별로 1개씩 선정하였다.

2) H영어조합법인

(1) 법인설립 및 시설투자

H영어조합법인은 1997년 8월 남해수협 중매인이었던 P씨를 중심으로 패류

양식 및 가공, 어선어업을 영위해온 어민들이 설립하였다. H영어조합법인이 취급하는 피조개와 새조개는 강진만을 끼고 있는 하동과 남해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활패로 유통되거나 가공되고 있다.

다음은 H영어조합법인이 피조개 가공 및 유통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시설투자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표 IV-3〉 참조).

〈표 IV-3〉 시설투자계획(H영어조합법인)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면적	수량	국비	용자	자담	합계
공장건물	396㎡	1동	204	122	82	408
폐수시설		1식	61	37	27	125
냉동시설		1식	81	49	31	161
가공기계		1식	39	23	14	76
합계	396㎡		385	231	154	770

자료 : H영어조합법인, 내부자료.

(2) 경영전략 및 조직형태

H영어조합법인은 패류가공분야에만 특화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원료는 주로 하동, 남해 등 주요산지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새조개와 피조개, 굴, 재첩 등 원료를 조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원료의 조달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표 IV-4〉 참조).

이러한 원료조달을 위해서는 수협을 통한 중매기능과 현지매입에 정통한 어민들의 참여가 요청됨에 따라 H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들에게 출자의무, 담보물 제공과 함께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표 IV-4〉

원료조달계획(H영어조합법인)

원 료 명	연간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조 달 시 기	조 달 방 법
새 조 개	192	480	1~4월	현 지 매 입
피 조 개	25	10	11~5월	
굴	300	10	12~2월	
재 첩	60	10	연 중	
장 어	20	10	4~11월	
농어 및 우럭	10	10	4~11월	
합 계	607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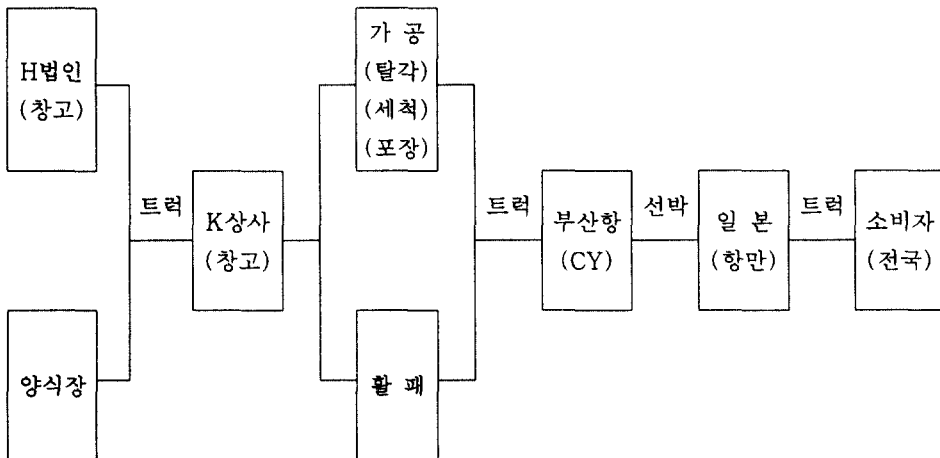
자료 : 〈표 IV-3〉과 동일.

한편 H영어조합법인은 국내의 한정된 수요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시장개척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1,700kg(4만 5천달러)의 활패를 수출하였다. 활패 일본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진해에 소재하고 있는 K상사를 이용하였으며 대금결제는 L/C 방식(local L/C)을 취하였다.

〈그림 IV-1〉은 H영어조합법인의 대일수출경로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

활패의 대일수출경로(H영어조합법인)



자료 : 〈표 IV-3〉과 동일.

산지어업인들은 10kg의 활패를 담은 용기(자체무게 2~3kg)를 단위로 자가 용이나 회사차에 실어 가공공장으로 보낸다. 진해의 가공공장에 도착한 활패는 냉동처리장 또는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가공시설이나 포장시설로 보내게 된다.

활패의 가공과정은 탈각→세척(부산물제거)→절단(내장제거)→세척(분미물 제거)→포장(진공포장, 스티로폴 포장, 박스 포장)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가공은 폐수처리, 냉동·냉장, 가공품의 포장, 운반과 같이 자본투자가 필요하므로 산지의 영세어업인은 가공사업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종래까지 대부분의 산지어업인은 활패상태로 가공공장에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원료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본투자와 함께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이 필요한 이유로 소규모 영세 어가의 산지가공참여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사업을 하기위하여 H영어조합법인은 설립되었으며 이 분야에 신규투자를 하였다.

앞으로 H영어조합법인은 K상사를 거치지 않고 산지가공하여 직접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거래업무는 K상사가 대행하고 있다.

(3) 영업목표 및 향후 전망

H영어조합법인이 제출한 경영수지계획에 의하면 향후 4년내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여 정상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H영어조합법인의 향후 4년간 손익계산서를 예측한 것이다(<표 IV-5> 참조).

<표 IV-5> 추정손익계산서(H영어조합법인)

단위 : 백만원

계	정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매 출 액		149	299	597	716
1. 가 공 수 익		(149)	(299)	(597)	(716)
매 출 원 가		267	304	355	367
1. 제 조 원 가		(89)	(134)	(179)	(185)
2. 금 용 비 용		(74)	(74)	(74)	(74)
3. 가 계 비 용		(75)	(80)	(85)	(90)
4. 기 타 경 비		(15)	(16)	(17)	(18)
매 출 총 이 익		-118	- 6	242	349

자료 : <표 IV-3>과 동일.

이러한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H영어조합법인은 공장의 건설, 각종 설비 시공을 동일한 업체에 맡기고 저가의 고성능기계를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의 유희노동력을 일용잡부로 활용하고 원료구매가 최대한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H영어조합법인은 부지 8,375평을 확보하고 이 위에 약 120평의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장은 주변도로가 매우 양호한 가운데 전력과 용수사정도 좋은 편이다. H영어조합법인은 향후 가공공장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어민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패류양식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3) C영어조합법인

(1) 법인설립 및 시설투자

C영어조합법인은 1997년 2월 조합법인의 대표자인 K씨가 자신이 경영해온 어민후계자 수산물직매장을 기초로 하여 제주산 수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K씨는 대학에서 수산물의 증식분야를 전공하고 전국 어민후계자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제주도 주민과 공무원의 지원으로 C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영어조합법인은 제주도내에만 수산물직매장과 가공공장을 1개씩 설치하고 서울에도 7개의 매장을 개장하였다.

〈표 IV-6〉은 C영어조합법인이 제주도지역에서 시행했던 시설투자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6〉 시설투자실적(C영어조합법인)

구 분		어민후계자 수산물직매장	수 산 물 산지가공공장	합 계
준 공 일 자		1996. 9. 5	1997. 2. 27	
투 자 장 소		제주시 오라동	북제주군 한림읍	
시설규모 (평)	대 지	754	1,007	1,761
	사 무 실	30	-	30
	판 매 장	208	-	208
	창 고	41	-	41
	냉 동 창고	23	-	23
	공 장 시 설	-	297	297
자금조달 (백만원)	국 고 보 조	78	385	463
	시 비 보 조	150	-	150
	용 자	160	231	391
	자 담	541	156	697
	합 계	929	772	1,701

자료 : C영어조합법인, 내부자료.

(2) 경영전략 및 조직형태

C영어조합법인이 처음 사업을 착수한 후 성공을 위해 취한 전략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분야 특산물들의 직거래를 통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수산물유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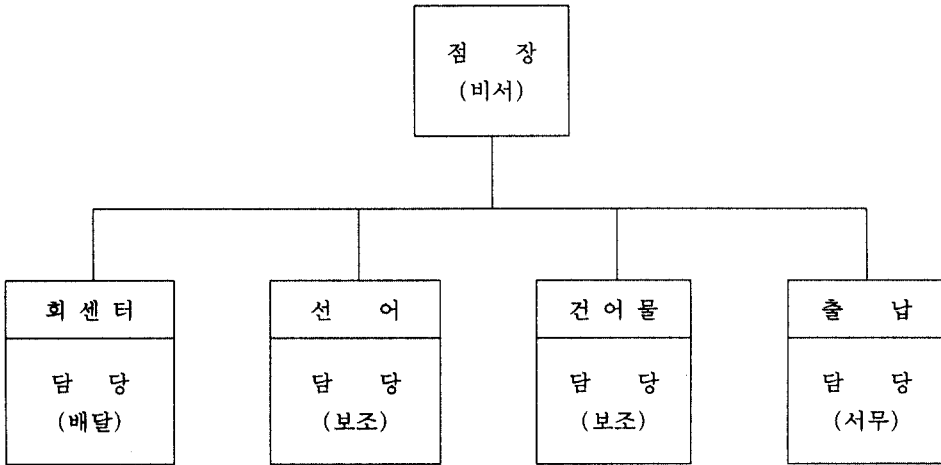
이를 위해 C영어조합법인은 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연안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로부터 옥돔, 갈치와 같은 제주도의 대표적 어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C영어조합법인은 어선어업을 하는 조합원을 무려 15명이나 확보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이 공급한 옥돔을 가공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활어, 선어 중심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수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일지라도 활어, 선어, 가공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매장을 여러지역에 분산시켜 설치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수요창출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대도시에 있는 C영어조합법인의 전형적 매장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 참조).

〈그림 IV-2〉

매장조직(C영어조합법인)



자료 : 〈표 IV-6〉과 동일.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C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제표는 현재 법인내 사정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종업원과의 면담과 그동안의 다른 경영실적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자산규모 30억원, 연간매출액이 24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먼저 1997년말 현재 C영어조합법인의 대차대조표(약식)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7〉 참조).

단순히 재무비율만 보면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4, 부채비율(부채/자본) 1.3으로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견상 양호한 재무비율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조합법인은 현재 영업부진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리상태에 있으며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표 IV-7〉 추정대차대조표(C영어조합법인)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유 동 자 산	1,395	유 동 부 채	1,000
1. 현 금 예 금	(595)	1. 미 지 급 금	(300)
2. 재 고 자 산	(500)	2. 차 입(마을금고)	(200)
3. 미 수 금	(300)	3. 차 입(수협)	(500)
고 정 자 산	1,646	고 정 부 채	731
1. 토 지(오라3동)	(226)	1. 차 입(시설자금)	(231)
2. 토 지(한림읍)	(302)	2. 차 입(수협)	(500)
3. 건 물(직매장)	(624)	자 본	1,310
4. 건 물(가공공장)	(428)	1. 출 자	(697)
5. 차 량(4대)	(66)	2. 보 조(국고, 시비)	(613)
자 산 합 계	3,041	부 채 및 자 본	3,041

자료 : 〈표 IV-6〉과 동일.

한편 C영어조합법인의 영업실적은 애초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IMF의 영향으로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관리를 받기전인 1997년 동안의 C영어조합법인의 추정 손익계산서(약식)를 나타낸 것이다(〈표 IV-8〉 참조).

〈표 IV-8〉 추정손익계산서(C영어조합법인)

단위 : 백만원

비 용		수 익	
매 출 원 가	21,600	매 출 액	24,000
1. 재 료 비	(17,600)	1. 선물(옥돔, 젓갈)	(10,000)
2. 노 무 비	(1,000)	2. 활 어(배달)	(3,000)
3. 경 비	(3,000)	3. 기 타(건어물)	(11,000)
매 출 이 익	2,400		

자료 : 〈표 IV-6〉과 동일.

주 : 재고자산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매출실적은 당초의 연간목표 336억원의 71%로 양호한 실적이지만

손익분기에 이르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매출이익률(매출이익/매출액)을 10%로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전망

C영어조합법인은 1998년 IMF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매출총이익이 전년의 24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수산물산지가공공장과 수산물 직매장은 분리되어 각각 금융기관의 관리상태에 들어갔으며 전체 종업원수 50명이 대부분 해고되고 겨우 5명의 정규직원이 남아 매장을 지키고 있다.

대표자였던 K씨는 금융기관에 의해 모든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양식업자 S씨가 대리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S씨는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제주도를 방문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옥돔, 젓갈 등 제주산 특산품을 판매하면서 활어를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건어물(오징어, 한치)과 냉동수산물식품(고등어 등)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대표자인 K씨가 경영해 온 가공공장(옥돔)도 다시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1998년말까지 경매를 통해 C영어조합법인의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찾고 있으나 S씨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Y영어조합법인

(1) 법인설립 및 시설투자

영광지역에는 1990년부터 굴비상가들이 상우회를 조직하여 전통특산물인 영광굴비의 명성을 보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상우회원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노력을 해왔다. 1992년 4월에 전남도청으로부터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3년 5월에 자본금 5,530만원의 주식회사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주)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굴비사업단은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금융을 위한 신용도 제고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고 조합원사이에 유지되어온 상호공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사업단은 1995년 2월 영농조합법인, 1995년 12월 영어조합법인으로 법인형식을 계속 변경하게 되었다.

〈표 IV-9〉는 Y영어조합법인의 시설투자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IV-9〉 시설투자실적(Y영어조합법인)

구 분		저온저장고 및 가공처리시설	수 산 물 산지가공공장	합 계
준 공 일 자		1995. 5. 2	1998. 9. 19	
투 자 장 소		영광군 법성면	영광군 법성면	
시설규모 (평)	대 지	2,322	-	2,322
	사 무 실	30	-	30
	전 시 매 장	-	120	120
	홍 보 실	-	118	118
	저 온 창 고	150	-	150
	냉 동 실	-	76	76
자금조달 (백만원)	보 조	215	800	1,015
	진 단	514	-	514
	융 자	15	-	15
	자 담	-	101	101
	합 계	744	901	1,645

자료 : Y영어조합법인, 내부자료.

(2) 경영전략 및 조직형태

1995년 12월 창립이래로 Y영어조합법인이 취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철저한 시장차별화로 볼 수 있다.

우선 영광굴비 보존회와 협력하여 영광굴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최대한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전국적으로 크게 홍보해온 점을 들 수 있다. 영광굴비

보존회는 현재 4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모두 Y영어조합법인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홍보관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Y영어조합법인은 영광굴비 대중화에 착수하여 영광에서 가공처리된 굴비를 박스당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가격차별화를 함으로써 시장 세분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Y영어조합법인에서는 영광굴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광군내의 다른 지역(특히 영광읍)에서도 영광굴비가 생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법성포굴비'라는 지역특산품으로 상표를 바꾸기도 하였다.

현재 굴비의 원료가 되고 있는 조기와 젓갈원료인 황석어는 여수와 목포에서 연간 1억 5천만원 상당액을 조달하며 성어기인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조달된 어류는 법성포내의 특이한 자연조건(연평균 기온 10.5°C, 습도 75.5%, 풍속 1.8m/sec)에 맞추어 독특한 맛을 내는 '법성포굴비'로 바꾸어진다.

Y영어조합법인은 대표이사, 전무, 이사(6명), 감사(2명) 등 임원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적 사무는 영업상무를 포함한 5명의 상근직원이 대행하고 있다. 법성포의 본사 외에 서울 중계동에 매장(직원 1명)을 갖고 있다. 법인에서 내부조직은 아니지만 출자회원, 준회원, 굴비보존회원, 상우회원 등 법성포의 굴비상가 대부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Y영어조합법인도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종업원과의 면담 및 그동안의 다른 경영실적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자산규모 21억원, 연간매출액이 4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1997년말 현재 C영어조합법인의 대차대조표(약식)를 추정해 보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추정대차대조표(Y영어조합법인)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유 동 자 산	505	유 동 부 채	100
1. 현 금 및 예 금	(445)	1. 차 입(농협)	(100)
2. 재 고 자 산	(50)		
고 정 자 산	1,646	고 정 부 채	660
1. 토 지(법성면)	(70)	1. 차 입(농협)	(100)
2. 건 물(저장고)	(419)	2. 차 입(은행)	(560)
3. 건 물(사무실)	(33)	자 본	1,381
4. 건 물(전시장)	(901)	1. 출 자	(366)
5. 비 품(사무기기)	(34)	2. 보 조(국고, 시비)	(1,015)
자 산 합 계	2,141	부 채 및 자 본	2,141

자료 : 〈표 IV-9〉와 동일.

재무비율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1, 부채비율(부채/자본) 0.6으로 대단히 양호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Y영어조합법인의 영업실적도 최근 IMF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실한 편이다. 〈표 IV-11〉은 1997년 한해동안 Y영어조합법인의 추정 손익계산서(약식)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11〉

추정손익계산서(Y영어조합법인)

단위 : 백만원

비 용		수 익	
매 출 원 가	360	매 출 액	440
1. 재 료 비	(150)	1. 굴 비 가 공	(440)
2. 노 무 비	(90)		
3. 경 비	(120)		
매 출 이 익	80		

자료 : 〈표 IV-9〉와 동일.

주 : 재고자산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4) 향후 전망

Y영어조합법인은 1998년 IMF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전년의 4억 4천만원에서 약 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1997년의 1,200만원에서 1998년에는 약 2천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1999년에 Y영어조합법인은 약 5억원의 매출과 1,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5% 정도 배당을 출자자에게 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동시에 전통식품의 전승발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온창고시설의 확장(105평), 젓갈공장 건설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경영분석 종합

지금까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영분석을 위해 세 개 사례에 대하여 설립 배경과 투자내용, 경영전략과 조직형태,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향후 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사례로 채택된 영어조합법인은 정부지원에 의해 토지나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을 주로 취득하고 있어 유동비율, 부채비율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업목표로 정하고 있는 매출액이나 수익률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조합법인의 판로 및 마케팅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가공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원료조달이 사업경영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흑자전환의 경영이 되기까지는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경영분석의 결과로 볼 때 정책자금의 효율성, 투자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어조합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관리기법의 도입,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 상품화전략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과 같은 기본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립이전부터라도 관련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사례분석의 종합

영어조합법인 사례분석 및 경영분석에서 도출된 현상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지원이 주로 시설자금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완공후 사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및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ii) 생산에만 전념해온 어업인들로서는 조합법인의 경영 노하우의 습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수산물직판장사업의 조합법인은 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함.
- iii)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정부지원의 수혜목적인 경우가 많음.
- iv) 판로 등 유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제주도의 경우는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내 소비촉진 또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으로 일본 수출을 희망하고 있음.
- v) 어촌계 또는 수협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법인의 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되어 있음.
- vi) 현재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업시작단계에서부터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함.
- vii) 가공기술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 viii) 어촌계 공동어장내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 그리고 채취사업의 유기적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인 영어조합법인 형태는 빈매와는 다른 형태로 어촌계 공동어장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큼.
- ix)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있음.

- x) 산지가공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원료조달이 사업경영에 매우 중요함.
- xi) 자연적 조건 및 수산사업상의 특성상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흑자전환경영까지는 4~5년의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xii) 과학적인 관리기법의 도입,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 상품화전략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같은 기본적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第 5 章 地域漁業團體와의 關係

(어촌계,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어촌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어업단체로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업종별 수협과 제조별 수협이 있는데 업종별 수협은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조직한 단체로 전국적 또는 사업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어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제조별 수협은 현재 전국에 2개소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다.

어촌계, 지구별 수협 및 업종별 수협 등의 지역어업단체는 목적, 대상사업, 구성원 자격, 성격 등이 서로 상이(〈표 V-1〉 참조)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지역전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직으로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고 어촌계원 및 수협조합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지역어업단체와의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된다.

1. 어촌계와의 관계

영어조합법인과 어촌계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어장이용과 관련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역할 및 기능의 측면에 서이다.

1) 어장이용(면허어업권 취득)

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 다음으로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2

〈표 V-1〉

영어조합법인과 지구별 수협 및 어촌계 비교

구 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 촌 계
법 적 근 거	○ 수산업법	○ 수산업 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
성 격	○ 협업적 어업경영 ○ 생산단체	○ 어업인,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 ○ 생산자단체	○ 일정 구역내 어촌계원의 공동사업수행 ○ 생산단체
목 적	○ 어업규모가 작은 어업인들이 어장, 수산시설 등의 자산을 공동출자하여 협업적 어업경영,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영어의 능률화와 소득증대	○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 생산력의 증강도모	○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도모
구성원 자 격	○ 일반 조합법인 - 어업인 ○ 협동양식어업조합법인 - 어촌계 계원 또는 수협 조합원	○ 지구별 수협 - 지역내 거주 어업인 ○ 업종별 수협 - 특정어업 경영 어업인 ○ 제조별 수협 ○ 특정수산제조업 경영자	○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업 무 구 역	○ 제한없음	○ 지구별 수협-시·군 ○ 업종별 수협-도 또는 전국 ○ 제조별 수협-도 또는 전국	○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정관에서 정함(통상 마을 단위)
의 결 기 관 및 임원	○ 총회 ○ 이사회	○ 총회 ○ 이사회 ○ 대의원회 ○ 조합장 및 상임이사 ○ 감사	○ 총회 - 계원으로 구성 ○ 이사회 (법인어촌계에 한함) - 계장과 이사로 구성

구 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 촌 계
설 립 절 차	○ 5인 이상의 어업인 공동정관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정부 인·허가 없음	○ 조합원 자격자 20인 이상 받기 및 당해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 과반수(최소한 200인이상)동의로 설립 →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립인가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원 10인이상 받기 및 정관 작성→시장·군수·구청장 인가 ○ 법인 어촌계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 필요
대 상 사 업	○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시설 ○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 또는 운영 ○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	○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 구매, 보관, 판매 및 검사 사업 ○ 신용사업, 이용·제조 가공사업 ○ 공제, 후생복지사업 ○ 차관사업 등	○ 지도사업 ○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 소속 지구별 조합에 속하는 어업권의 행사 ○ 어업인의 생활필수품,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등
상 호 관 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협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 지구별조합은 어장관리 등 어촌계의 구역내 업무를 지도 감독 -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	○ 사업수행시 수협으로부터 자금차입 가능
정 부 지 원	○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 협동양식어업면허	○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 마을어업 우선면허	○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 마을어업 우선 면허

자료 :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 개요」, 1997을 재작성.

순위로 면허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9조 2항). 이렇게 영어조합법인에게 면허어업권 취득을 허용한 것은 어촌계의 어장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조합법인에게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인 어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촌계의 어장이용 및 관리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어촌계 명의로 어업권을 취득하여 협업 및 공동사업에 의한 생산보다는 행사계약에 의한 개인에게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면허주체와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고 위탁생산으로 어촌계의 취지에 맞지 않다.¹⁷⁾ 이렇게 행사계약에 의한 생산방식은 면허어장에 비해 어촌계원 즉 노동력의 과잉으로 모든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협업사업에 의한 생산은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촌계에게 면허어업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어업인인 어촌계원이 실질적인 어장면허주체가 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장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어조합법인에게 면허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면허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법인의 구성원은 어촌계원 또는 수협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장이용의 경합에서는 어촌계가 항상 우선순위에므로 어장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우려하는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

2) 역할과 기능

어촌계의 역할과 기능은 면허어업권의 주체이며 생산과 관련된 공동사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계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역할과 기능은 협업적 어업경영체로서 생산, 가공 및 수출 등 조합법인의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생산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조합법인이 어촌계에 비해 어업의 경영적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로 어업활동의 이윤추구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영어조합법인의 이윤추구 경향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자체 사업실시를 위한 가공·유통 시

17) 간척·매립, 유류오염 등에 의한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업은 하지 않으나 어촌계원이라는 것만으로 보상금을 수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설을 설치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어촌계는 어업권 취득 및 어업권 행사, 지도사업 등 생산과 관련된 단순 사업으로 한정되어 어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출현한 영어조합법인과 비교해 보면 어촌계는 영어조합법인인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을 협동으로 경영하기에는 i) 다수인¹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집행의 한계, ii) 사업영역이 마을 공동어장이라는 지역적 한계, iii) 구성원의 고착화로 인한 사업의 능동적 대처 한계, iv)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계 미비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수의 구성원, 협업화, 법인화를 통하여 어촌계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을 유연하고 기동성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협과의 관계

지역어업단체로서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은 생산자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물의 위탁판매, 생산자금의 융자 등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에 주력하는 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다.

지구별 수협과의 관계를 보면 영어조합법인은 수협으로부터 생산자금을 차입하거나 수협을 통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므로 서로 의존 및 협력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업종별 수협도 지구별 수협과 동일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별 수협은 그 자체사업으로 가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업종별 수협과의 관계는 앞으로 구축해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어조합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업종별 수협의 설립 및 활동이 활발한 경남지역은 설립이 저조하나 그 반대로 전남지역에서는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8)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어조합법인당 구성원은 8.3명이고 어촌계는 87명으로 구성원수에서는 어촌계가 약 10배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

앞으로 전남지역에 업종별 수협이 설립된다면 이들 영어조합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별 수협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업종별 수협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어업경영규모의 취약 등 업종별 수협으로 설립할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수협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먼저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영어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한 뒤 영어조합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업종별 수협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출현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보면 피조개 또는 굴을 1차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완제품회사에 납품하는 등 다양한 사업종류의 영어조합법인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인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자체가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 중 양식사업의 생산형 영어조합법인이 가장 많은데 이들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상호협력 관계구축

생산단체로서의 영어조합법인과 어촌계, 생산자단체로서의 수협, 이 3조직 간의 관계를 구성원의 측면에서 본 상호관계를 간결하게 제시한 것이 <그림 V-1>이다.

영어조합법인의 구성원 자격은 어업인,¹⁹⁾ 어촌계원 또는 수협조합원으로 어촌계 및 수협보다는 포괄적인 구성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어업인은 수협에 가입할 수 있고 수협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므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의 3조직의 구성원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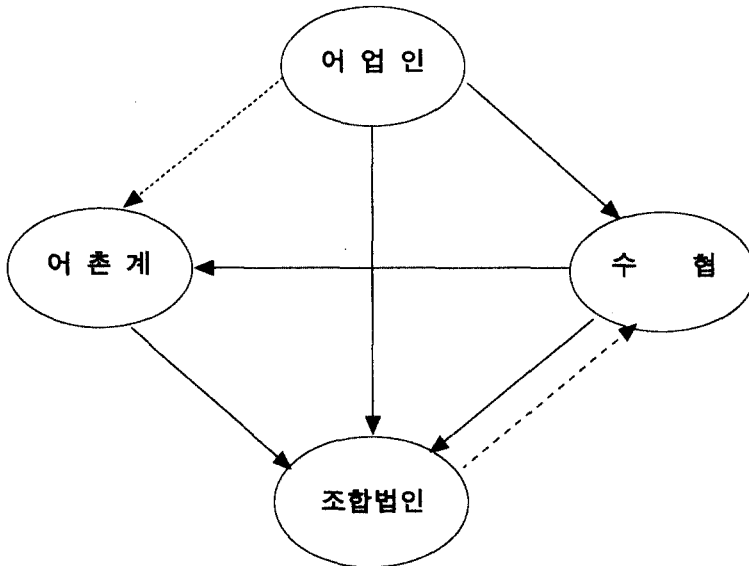
19) 어업인에 관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제3조 제3호)에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제26조 제1항)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어업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조직의 동질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이러한 동질성은 조직내 갈등 및 불화를 저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또한 어업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및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복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동일 어업인이 여러 조직에 관여하므로 조직간의 이해관계가 달라도 상호협력관계를 도출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세 조직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고 특히 영어조합법인제도는 어촌계 역할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구별 수협의 역할을 보완하여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어촌계와 수협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어촌계도 수협도 할 수 없는 사업경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림 V-1〉

구성원 측면에서 본 상호관계



주 : 점선화살표는 어업인이 어촌계에, 조합법인도 수협에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 실선화살표는 가입자격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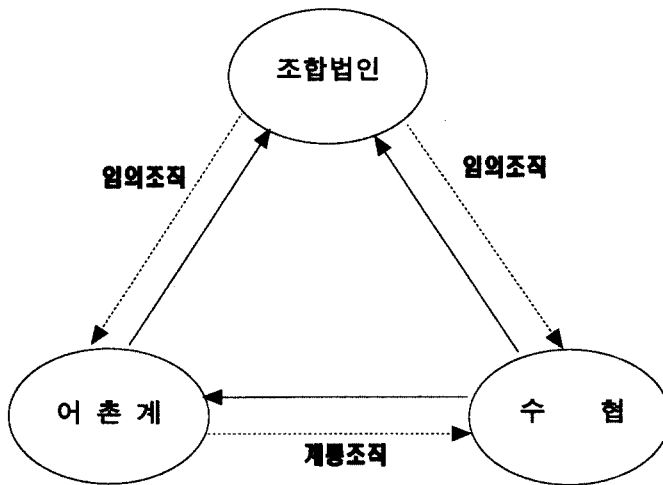
어촌계의 한계를 감안하고 수협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영어조합법인제도는 이제 막 시작단계로 어촌계 및 수협에 비하면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촌계, 수협, 영어조합법인의 세 조직간에는 어업·어업인·어촌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 즉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구조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요소는 i) 동일한 구성원이 세 조직에 전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질성, ii) 대체적으로 군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수협의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의 동질성, iii) 생산·유통·자금 서비스 등의 역할 등이며 이러한 요소는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 조직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V-2>이다.

<그림 V-2>

바람직한 상호관계



어촌계는 수협의 계통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촌계는 생산주력, 수협은 판매 주력이라는 역할의 측면에서는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²⁰⁾로 파악할 수

20)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소규모 영농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조합법인과 어촌계와의 관계는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합법인을 어촌계내 임의조직으로 간주하여 어촌계 사업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조합법인이 수행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법인과 수협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조합법인이 수협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의 임의조직으로서 경제사업(생산물의 수협위판장 이용) 및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는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구축은 지역내 어업단체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어업 및 어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어업인 및 단체들간의 의식적인 노력없이 불가능하다. 그 노력의 하나로서 영어조합법인은 당해 어촌계의 내부적 승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지구별 수협 또는 업종별 수협에 단체가입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어업단체로서 특히 규모가 큰 수협은 이 두 조직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가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어업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第 6 章 發展方向

현재의 소규모 영세어가 및 일부 자본가에 의한 생산체제는 급변하는 수산업의 내외정세에 대처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침체되어 가는 어촌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개별 영세 소규모 어가의 조직화에 의한 새로운 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현재의 생산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어조합법인제도는 그 당위성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영어조합법인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자료미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과제,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자구노력은 영어조합법인을 긍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현 단계의 영어조합법인 문제점은 주로 설립요건미비, 사후관리, 경영능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영농조합법인제도에서 나타나는 설립과열 현상, 부실운영, 농협과의 갈등 등은 없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영어조합법인 제도에 내재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향후 영어조합법인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영어조합법인제도는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목적 및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규모 개별어가의 조직화 즉 결합에 의한 어업의 규모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둘째, 어업의 경영적 측면을 증시킨 협업적 경영방식 및 법인화로 이윤추구를 통한 어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면허어업권의 취득은 면허주체와 이용자가 동일하고 또한 책임감을 가진 적합한 어업인의 효율적인 어장이용을 유도하여 어촌의 어업인력 유출을 막고 어촌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스럽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판단되는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 사업형태'를 제시해 보고,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제도개선 및 과제, 영어조합법인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 사업형태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 사업형태'란 경영경험이 없는 영세 어업인이 비교적 용이하게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초보단계에 있어 조합법인의 사업형태를 의미한다.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형태로 '양식사업의 영어조합법인'과 '양식-산지가공사업의 영어조합법인'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 기준은 지금까지의 생산 기술 및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 두 형태의 영어조합법인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 i) 고부가가치의 양식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 ii) 양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 또는 습득해야 한다.
- iii) 판로가 확보되어 있거나 판로의 애로가 없어야 한다.
- iv) 지속적인 원료조달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v) 가공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산물의 판매 및 직판사업은 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마케팅기술 등의 전문적 경영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변

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심하여 사업경험이 일천한 현 단계의 영어조합법인 사업으로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설립기간 2년 미만,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된 사례조사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바람직한 영어조합법인 형태'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부분이 많다. '합리적인 영어조합법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제도가 성숙될 때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2.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1) 제도개선

영어조합법인은 수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정부의 인·허가의 절차없이 법인등기만으로 조합법인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난립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등기사항으로 법인의 자산 중 현물 및 현금 출자의 경우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류로 그치고 있어 실제로 구성원이 출자한 자본금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조합법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조합법인의 설립이 자유로운 반면 등록후 법인 해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부실운영되는 등 유명무실한 조합법인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영어조합법인 중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금 회수조치와 함께 해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요건(최저출자금액 규정 등)을 강화하여 조합법인 설립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므로 어업인 규정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대상 사업자 선정방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좁은 지역에서 혈연 및 지연관계가 얽혀 있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호르기 쉽고 특히 민선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제3의 기관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사업자 대상자격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 수혜를 위한 법인설립의 과열을 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단계인 영어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과정을 밟아온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와 시군의 의견수렴 후 해양수산부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 내용〉

- 지도·감독·관리에 관한 규정의 명료화
- 설립요건의 강화(최저출자금 규정신설 등)
- 어업인규정의 명확화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방법의 개선(제3의 기관참여)
- 지원사업자 대상자격 기준 설정(의견수렴 후)

2) 어업 경영체로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실시에 의한 운영중 또는 시설완공후 사업준비단계에 있는 조합법인의 경영상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은 자금조달문제, 판로확보 등의 유통문제, 사업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경영능력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것 즉 자금조달능력, 판로확보능력, 경영능력은 조합법인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자금조달문제로는 주로 운영자금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현재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²¹⁾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저리융자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경영의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개보수 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일회성 자금지원에 그치지 말고 후속지원하여 건실한 조합법인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판로확보문제는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와 수협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다양한 사업이므로 대량으로 유통시켜야 하는 전국적인 유통망보다는 일정 지역내 판로망을 개척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형 영어조합법인은 지역의 수협조직과의 협조체제를 맺어 생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수산물 유통구조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조합법인의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나 어업인으로 조직된 조합법인이 스스로 마케팅 능력을 체득하기란 시간과 시행착오 등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마케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즉 실무교육의 실시 및 수산물유통정보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주로 지역어업단체의 리더인 수협이 맡아야 하며,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능력문제는 사업체 경영경험이 일천한 영세어업인에 의한 조합법인 운영이므로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능력부족의 문제는 조합법인의 부실운영을 초래하여 파산 또는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영어조합법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 대한 교육의무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체제²²⁾가 확립되

2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개보수 및 현대화, 자동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6.5%의 농기업경영자금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음. 1997년도에 약 2천억원이 지원예산이었음.

22) 농림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경험 및 전문지식의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 회

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컨설팅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있다. 수산공무원교육원 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전문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어업 경영컨설팅의 수행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고 컨설팅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영어조합법인을 어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 판매를 위한 수협과의 협조체제 구축
-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교육 및 훈련의무화
- 경영지도 및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체제 확립

3. 영어조합법인의 자구노력

조합법인의 구성원은 영어조합법인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도의 장점을 살려 조합법인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중 조직관리 및 조직원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인은 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의 상호노력에 달려 있다(〈표 VI-1〉 참조).

특히 설립동기는 영어조합법인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동기가 명확하지 못하고 사업의지가 없으면 부실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협업적 경영이므로 참여 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성원간에 내분이 발생하기도 하여 존립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또는 구성원 한 개인에 의한 조합법인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제, 마케팅, 농림정보활용방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영교육 및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중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표 VI-1〉

성공적인 영어조합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구 분		요 건
조 직	구성원선정	참여동기, 영어기술, 영어규모, 노동력, 출자규모 등의 동질성확보
	대표자자질	친화력, 통솔력, 판단력, 결단력, 경영관리 능력 등을 갖춘 덕망있는 사람을 선출
	조직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총회의결사항 반드시 준수
	구성원 불만조정	조직의 인화단결을 위해 구성된 단합을 중요시하고 조직에 불만이 있으면 상호양보 조정
	조직원의 사고방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법인사업에 대한 의지와 자긍심이 강해야 함
경 영 관 리	회계처리	법인체 수입지출 기장 및 결산이 체계화되어 경영성과의 진단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짐
	비용절감	연간 작업면적 및 가동일수를 늘려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모적 지출 최대한 억제
	투자 적정화	기계 및 시설의 도입시 적정규모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자산 운용 및 수익 배분	법인체 소유자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수익은 금후 투자계획 및 적립금을 우선 고려하고 공정하게 배분
	기술 습득	구성원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 등에 관심과 투자를 집중
	품질 관리 및 홍보	생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위탁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홍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1997. 9. 80쪽

주 : 성공적인 영농조합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영어조합법인에 적용시켜 보았음.

그리고 오늘날의 어업은 일차적인 생산만이 아닌 '생산→가공→판매→서비스'라는 일관된 경영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지만 계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능력 특히 대표자의 전문지식 및 경영노하우는 중요하며 조합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

서 어업을 경영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경영능력을 높여 나가며 철저한 장부기록을 통하여 스스로 경영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관리, 재무관리 및 자금관리, 수익분석 등 총괄적인 경영관리가 어업인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또는 훈련 습득이 중요한데 조합법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第 7 章 結 論

영어조합법인제도는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협업적 어업경영에 의한 경쟁력 제고 및 어가소득 증대가 그 목적이며 앞으로 그 발전 방향에 따라 수산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조합법인은 영세어가의 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협업화 및 법인화로 인한 사업상의 장점을 살린 이윤추구의 어업경영체로서 생산-가공-판매-수출사업 등 모든 사업경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제도는 기존의 소규모 영세어가 및 일부 자본가에 의한 생산체제를 보완하여 세 개의 축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양식어업권 취득은 폐쇄적인 어촌계 어장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어장이용제도의 개선 및 어촌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수산업의 구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우려는 많으나 아직까지 설립초기 단계로 별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하여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갈등 및 모순을 갖게 했던 두 가지 사항을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하나는 어가도 어느 정도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산기반시설 및 자본금 등 능력을 갖춘 어업인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수고를 하면서 과연 어가의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및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과 능력을 갖춘 어가에 대한 정부지원이 왜 필요하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업인에 대한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즉 정부의 역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국가 경영에 관련되는 철학적인 문제였다.

또 하나는 지원을 하되 무상의 보조는 줄이고 장기저리의 융자로 대체하는 것이 보조금 수혜목적이 아닌 자기책임하에서 조합법인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일부 담당 공무원은 보조를 받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때문에 무상의 보조는 없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지역마다 수산업 발전정도가 상이하므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보조에 의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參考文獻

- 박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 I)」, 박영사, 1988. 1.
- 김정호·박문호,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2.
- 김정호·이성호·박문호, 「영농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9.
- 서돈각, 「상법강의(상권)」, 법문사, 1985. 7.
- 육영수·신영태, 「UR이후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2.
- 조상원(편), 「1997년도 법전」, 헌암사, 1997. 1.
- 조양희, 「한미상사법 비교연구」, 삼영사, 1982. 7.
- 최성애,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1996. 1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6 연수원교육 교재 ①」, 수협법, 수산업법 (사) 농정연구포럼,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과제」, 1997. 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1995. 6.
- 한국영농법인중앙회, 「영농법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1997. 8.
-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 개요」, 1997. 12.
- _____,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附 錄

1. 영어조합법인 세금관련 사항 / 81
2. 영어조합법인설립시 세무신고사항 / 83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예 / 85
4. 등기신청서 작성예 / 87
5. 현물출자(어장)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 / 90
6. 수산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영어조합법인 관련) / 93
7.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 106

1. 영어조합법인 세금관련 사항

〈영어조합법인 세금감면 내용〉

내 용	관 련 조 문
〈국 세〉 가. 법인세 면제 - 출자조합원당 연간 1천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 어업용 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 용역 - 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어구, 어망, 사료 등) 다. 인지세 면제 - 출하·가공·판매·보관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지방세〉 가. 취득세 면제 - 조합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나. 등록세 면제 - 조합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시의 등록세 면제 다. 재산세 면제 - 과세기준일(매년 5.1)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라. 종합 토지세 면제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 사업소세 면제 - 환경개선 장비를 위하여 사업주에 부과하는 사업소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10호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 지방세법 제267조제5항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

내 용	관 련 조 문
〈출자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배당소득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과세기간별 1천 2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5/100으로 하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동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봄 〈참고사항〉 ○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제4항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51조의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 제2항

2. 영어조합법인설립시 세무신고사항

세 법	조 합	항 목	내 용
법 인 세 법	법 제60조	법인설립 및 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와 다음의 서류 제출 -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있는 경우 그 출자물건의 명세) - 출자자의 주소, 성명과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 간주
	시 행 령 제50조7항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신고(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	○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회계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
	시행령제37조의 제3항 및 제91조의3제8항	재산자산평가방법 신고	○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제출
법 인 세 법 부가가치세법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등기부등본(법인설립전 발기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허가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옥대장

세 법	조 합	항 목	내 용
지 방 세 법	제120조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
	제118조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신고	○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
	제234조의21	토지소유권 취득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 등기가 안된 경우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 당해 토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
	제251조	사업용 건축물 신고	○ 건축 증·개축, 멸실, 건축물양수, 소유자 주소, 성명, 명칭변경, 사업소 이전, 휴·폐업시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청에 신고
	제192조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시·군청에 신고
	제196조의2	자동차 취득·폐 지 신고	○ 자동차 취득·폐지시 변경·이전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시·군청에 신고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예

창립총회의사록

년 월 일 시·도 군 리 번지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발 기 인 : ○○○. ○○○. ○○○. ○○○. ○○○. (명)

출석발기인 : 전원

발기인 대표 ○○○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묻은 바 전원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대표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감 사 ○○○

총 무 ○○○

○○부장 ○○○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제1회 출자납입의 건

의장은 본 영어조합법인 설립당시의 제1회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키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하다.

년 월 일

○○ 영어조합법

의장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함)

4. 등기신청서 작성예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1. 명 칭 : ○○영어조합법인 (주1)
2. 사무소 : ○○도 ○○군 ○○면 ○○리 ○○번지
3. 등기의 목적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명 칭 : ○○영어조합법인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분사무소 : ○○도 ○○군 ○○면 ○○리 ○○번지 (주2)

목적과 사업 : 어업경영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주3)

- ①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②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 ④ 어업작업의 대행
- ⑤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출자1좌의 금액 : 금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기타의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4)

출자의 산정방법 : 현물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주5)

해산사유 (주7)

이사의 성명과 주소 (주8)

이사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도 ○○군 ○○면 ○○리 ○○번지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 (주9)

대표이사 ○○○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 사 ○○○

• 첨부서류

(1) 정관 (주11)

(2) 창립총회 의사록 (주12)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년 월 일

신청인 ○○영어조합법인 (주13)

○○도 ○○군 ○○면 ○○리 ○○번지

대표이사 ○○○

○○도 ○○군 ○○면 ○○리 ○○번지

○○ (지방법인○○등기소) 귀중

〈주 의 사 항〉

- (# 1)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 시·군내에서 다른 영어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 여부에 유의해야 함
- (# 2) 설립당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 3) 정관에 규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 4·5·6)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 최고한도를 명 확시 기재함
- (# 7)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 8) 이사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 9)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 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함
- (# 10) 이상의 등기를 구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사항과 같은 것 으로 위 기재사항 외에도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음
- (# 11·12)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정을 받아야 함
- (# 13) 설립등기는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한 조합원(대표이사)이 신청함

5. 현물출자(어장)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 6)

- 조합법인을 설립중일 경우에는 창립총회후 설립등기전 출자 -

① 출자재산의 평가

조합법인은 출자재산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② 현물출자계약

- 계약당사자 : 조합법인(대표이사)과 출자조합원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별지 현물출자 계약서 참조)

③ 계약설립후

- 출자증서의 발행 (조합법인)
 - 조합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을 기재

※ 기재요령

- 어장(양식장) : 어장(양식장)의 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기재
- 어선 :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년도, 총톤수, 어업의 종류(허가번호)를 기재
- 부동산 : 지번, 지목, 면적, 건물구조 등을 기재

• 출자재산의 양도 (출자조합원)

- 출자목적인 재산을 조합법인에 양도하고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증서를 교부받음

□ 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 조합법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신청서(법무부와 상의 작성)
 - 현물출자계약서
 - 등기관리증
 - 출자조합원(양도자)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용) 및 주민등록등본
 - 조합법인(양수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현 물 출 자 계 약 서

1. 출자재산

가. 부동산의 소재·지번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지 목 :

다. 면 적 : ㎡

라. 평 가 액 : 원

마. 출자금액 : 원(출자좌수 : 좌)

2. 계약당사자는 (이하 출자조합원을 “갑”, 영어조합법인을 “을”이라 칭함) 다음과 같이 약정함

가. 갑은 상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함

나. 을은 갑소유 상기부동산을 양수하고 출자액 ○○○○○○○원의 출자
증서를 교부함

19 년 월 일

갑(양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을(양수자) 법 인 명 : ○○영어조합법인

대 표 이 사 : (인)

주 소 :

6. 수산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영어조합법인 관련)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 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 · 군 · 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 개발수면(이하 “대단위 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 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9조의 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이하“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의 어촌계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④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⑦ 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법인의 조합원 수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준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2(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및 유통·가공업자 제11조의3(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의8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8호·제13호에 기재한 사항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법인의 업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11조의4(이전 및 변경 등기 등) ① 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 및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출자내역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7조 및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의5(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제197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및 제2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6(조합법인의 출자) ①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현금이나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u>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u>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사업능력·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법인의 연간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 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11조의7(조합법인의 사업) ①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 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8(정관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 실적기록 및 제출)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의9(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법인의 합병 3. 조합법인의 파산 4. 조합원이 5인미만이 된 후 1년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제11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영 어 조 합 법 인 현 황 대 장									
①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③ 주 된 사 무 소									
소 재 지									
대 표 자		④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대표이사)		⑤ 주 소							
⑦ 사 업 구 역									
⑧ 설 립 일 자				⑨ 조 합 원 수				명	
				(준조합원수)		(		명)	
⑩ 사 업(종 류)									
출 자 자 산 의 내 역	⑪ 총출자계좌		계좌 (천원)		⑫ 준 조 합 원 출 자 계 좌 수		계좌 (천원)		
	⑬	종 류	내 역	평가액	⑮	종 류	내 역	평가액	
	계			천원	계			천원	
	⑭	종 류	내 역	평가액	⑯	종 류	내 역	평가액	
	선	계				계			천원
⑰ 현 금								천원	
⑱ 합계(평가액+현금)								천원	
⑲ 경영형태									
⑳ 조합원수 변경현황		연 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조합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준조합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㉑ 대표자(대표이사) 선임 변경 기재란					
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㉒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재란					
일 자	소 재 지		일 자	소 재 지	
㉓ 출자계좌수 변경 현황					
일 자	증 좌	감 좌	총출자계좌수	변 경 내 역	
㉔ 연도별 결산 현황					
연 도		년	년	년	년
결산실시여부					
배 당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결산	조수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수지	순수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㉕ 사무실 운영 현황					
사무실 별도 확보 여부			확보 (m ²), 미확보		
상근 직원 채용 여부			채용 (명), 미채용		
회계처리방식의 종류			단식부기 · 복식부기		

[별지 제3호 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연도)

1. 영어조합법인 현황

명 칭		전 화 번 호	() -
대표자(대표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된 사 무 소 소 재 지		설 립 일 자	. . .

2. 사업실적내용

구 분		전년도 (년)	당해연도 (년)	증 감
조 합 원 수 (준 조 합 원 수)		명 (명)	명 (명)	명 (명)
출 자 액 (계 좌 수)		천원 (계좌)	천원 (계좌)	천원 (계좌)
사 업 (종 류)				
생 산	수 량	천톤	천톤	천톤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경 영 실 적	총 수 입	천원	천원	천원
	총 지 출	천원	천원	천원
	손 익	천원	천원	천원
보조액	국 고	천원	천원	천원
	지 방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보조액누계)	(천원)	(천원)	(천원)
융자액	융 자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상 환 잔 액	천원	천원	천원
부 채 액		천원	천원	천원

48277-33511일
1997. 6. 2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연도)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결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실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구	분	합 계	포 획 채 취	양 식	수산물 가 공	수산물 유 통	기 타
법 인 수	계						
	신 규 법 인						
	기 존 법 인						
조 합 원 수 (명)	계						
	(준조합원)						
	신 규 법 인 (준조합원)						
	기 존 법 인 (준조합원)						
생 산	수량(천원)						
	금액(천원)						
경 영 수 지	흑 자 법 인						
	적 자 법 인						
보조액 (천원)	당 해 연 도						
	보 조 누 계						
융자액 (천원)	당 해 연 도						
	융 자 잔 액						
부 채 액(천원)							

* 양식은 종묘의 생산 및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48277-33611보
 1997. 6. 2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